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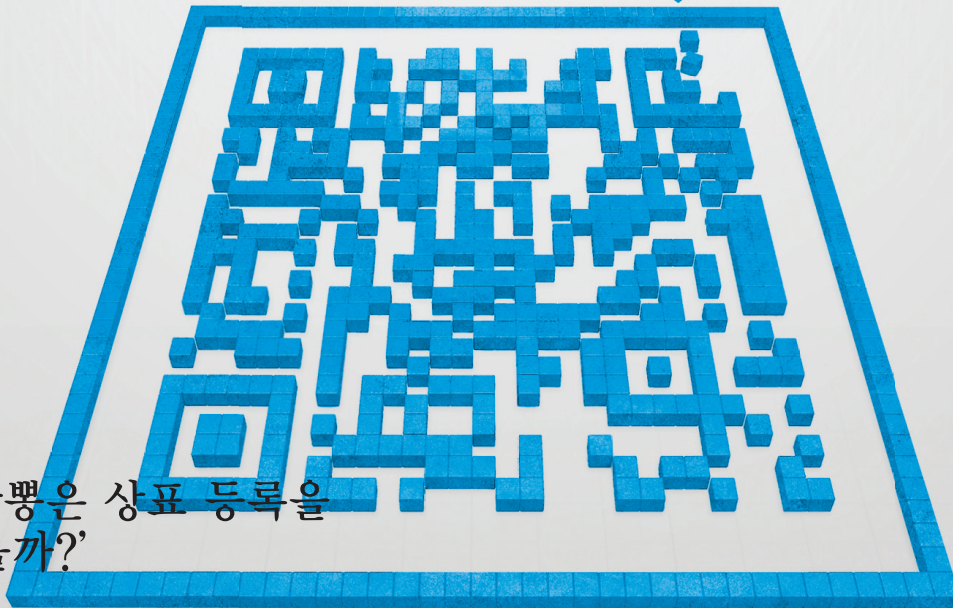
INVENTION & PATENT

2012 July

07



INVENTION & PATENT _ Vol . 432



[Focus]

‘나가사키 짬뽕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한중 FTA에 따른 대응 방안 분석

Contents

Column

- 10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슬픔
- 12 '나가사끼 짬뽕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 16 신간안내

Report

- 18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
- 24 한중 FTA에 따른 대응 방안 분석
- 28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인 검토 및 제언
- 34 OLED 포장의 상표등록 가능성
- 40 특허분쟁에서의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전략에 대한 고찰
- 45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 46 PCT 국제특허의 개별국 진입 국가 선정
- 51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 52 통풍을 치료하는 약초와 특허
- 58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Information

- 60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 64 KIPO NEWS 특허청 소식
- 67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 68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71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 72 발명만화 물래발명이야기 - 워키토키
- 7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 76 건강하게 삽시다 무더운 여름, 현명하게 이겨내기



2012 지식재산분야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 공모주제

-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확산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가 추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아이디어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개인 및 팀 제한 없음)
※ 팀 응모의 경우 3명 이내로 제한

■ 공모부문

공모부문	공모주제
발명 장려	지식재산의 가치를 넘겨노소 누구에게나 쉽게 전파하기 위한 사업 발명가 또는 발명에 관심있는 자의 발명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특허 활용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발명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거래될 수 있게 하는 사업아이디어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발명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한 지원사업 아이디어 우수(특허)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육성방안 아이디어 등
창의 인재 육성	초·중·고등학생을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 또는 행사아이디어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사업 아이디어 바쁜 직장인을 위한 효과적인 지식재산 교육사업 아이디어 등
기타	상기 3개 공모분야 외 지식재산 및 우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모두 가능

■ 시상내역(※심사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수를 제한할 수 있음)

구분	시상수	상금(포상)
최우수상	1명(또는 팀)	150만원
우수상	2명(또는 팀)	각 50만원
장려상	3명(또는 팀)	각 30만원

■ 공모일정

- 공모전 공고 : 2012. 6. 25
- 신청서 작성 및 접수기간 : 2012. 7. 2 ~ 7. 31
- 수상자 발표 : 2012. 9월(예정)
- 시상식 : 2012. 10월(예정)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시 사업제안서 파일 첨부
- 2건 이상 제안서 접수시, 1작품당 1개씩 개별 접수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 : 02-3459-2725, idea@kipa.org)

■ 주 최 : 한국발명진흥회

미국 특허분쟁 / 소송 및 방어전략

US Patent Law: Patent Litigation Causes of Action and Defenses

○ 프로그램 개요

- 일 시 : 2012년 07월 19일(목)~ 07월 20일(금)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제 1교육장
- 교육 대상
 - 기업 또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미국특허 관련업무 종사자
 - 미국 특허출원 및 소송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 교육 인원 : 30명 내외 (선착순 마감)
- 교육비 : 23만원 (중식제공)
- 교육비 지원 및 할인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80% 지원(*40,000원만 선납부)
- * 조기 신청자(7월 11일까지 등록자),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의 경우 교육비 50% 할인 (*110,000원만 선납부)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할인 적용 불가

○ 프로그램 특징

- 미국 특허법, 특허분쟁 및 소송에 대하여 이론뿐 아니라 사례 및 실무중심으로 강의운영
- 실무경험이 풍부한 해외 로펌 전문가의 초청강연을 통한 해외 특허 실무경험 공유
- 특허출원 및 소송분야에서 미국 최고 수준의 특허전문 Finnegan & Henderson의 파트너 변호사 초청강의
- 강의는 우리말과 영어를 병행하고, 영어 강의시 한국어로 Q&A 및 요점정리를 통한 내용 이해 도모

○ 프로그램 일정

일 정	시 간	교육내용
7/19(목)	09:30-09:50	Overview of the Program
	09:50-10:40	US Patent Law Overview
	10:40-11:00	Q/A-Break
	11:00-12:00	US Patent Law Overview
	12:00-12:10	Q/A
	12:10-13:20	Lunch
	13:20-14:20	Infringement Part I
	14:20-14:30	Q/A-Break
	14:30-15:30	Infringement Part II
	15:30-16:10	Infringement Case Studies
7/20(금)	16:10-16:20	Q/A
	09:30-10:40	Considerations in Forming Defenses
	10:40-11:00	Q/A-Break
	11:00-12:10	Defenses—noninfringement and invalidity
	12:10-13:20	Lunch
	13:20-14:40	Defenses—invalidity continued
	14:40-15:00	Q/A-Break
	15:00-16:10	Defenses—unenforceability
16:10-16:30	Q/A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 주 강사

Charles H. Suh



- ▶ Finnegan & Henderson 파트너 변호사
- ▶ 주요약력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 Virginia Trial Lawyers Association
- ▶ 최종학력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D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12.06.21(목) ~ 07.18(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pid@kipa.org) 또는 FAX(02-3459-2859)접수
 - * 신청 후 확인 전화 주시면, 더욱 빠르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Tel: 02-3459-2815, 2806)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 참조

2012 지식재산캠퍼스 연간 교육일정

▶ 지재권 일반과정

✳ 특허청 80%지원, 노동부 약 15%환급

NO	일자	강좌명
1	02.08 ~ 02.10	지식재산권 기초 1기
2	02.15 ~ 02.17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1기
3	02.22 ~ 02.24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1기
4	03.14 ~ 03.16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5	03.21 ~ 03.23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
6	03.28 ~ 03.30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1기
7	04.04 ~ 04.06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1기
8	04.25 ~ 04.27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1기
9	05.09 ~ 05.11	지식재산권 기초 2기
10	05.23 ~ 05.25	중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소송)
11	06.05 ~ 06.08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2기
12	06.13 ~ 06.15	지식재산 번역(한-중)
13	06.20 ~ 06.2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OA)
14	08.22 ~ 08.24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5	08.29 ~ 08.31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16	09.05 ~ 09.07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2기
17	09.12 ~ 09.14	지식재산 번역(한-미) 2기
18	09.19 ~ 09.21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2기
19	09.26 ~ 09.28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20	10.10 ~ 10.12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21	10.24 ~ 10.26	유럽특허 마스터 과정(출원~소송)
22	10.31 ~ 11.0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분쟁소송)
23	11.07 ~ 11.09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2기
24	11.14 ~ 11.16	지식재산권 기초 4기

▶ 지재권 특별과정

✳ 특허청 80%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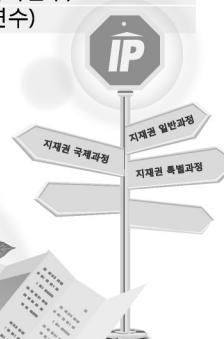
NO	일자	강좌명
1	02.28	한-미,한-EU FTA 이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2	04.17	수출입시 꼭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실무
3	04.19	Patent Troll 대응 및 단계별 특허분쟁 대응요령
4	05.03	특허침해 감청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
5	05.29	직무발명 제도 및 직무발명 보상평가
6	06.26	영업비밀 관리 및 부정경쟁 방지 실무
7	06.28	특허 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8	09.25	연구노트와 발명신고서 작성법
9	10.02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 관리전략
10	10.05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1	10.17	심사관과 함께하는 명세서 클리닉
12	11.22	올해의 판례동향-특허, 디자인
13	11.23	올해의 판례동향-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 지재권 국제과정

NO	일자	강좌명
1	03.08 ~ 05.22	PADIAS* (해외강사 국내초청 강의)
2	7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_EUROPE (해외연수)
3	8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_USA (해외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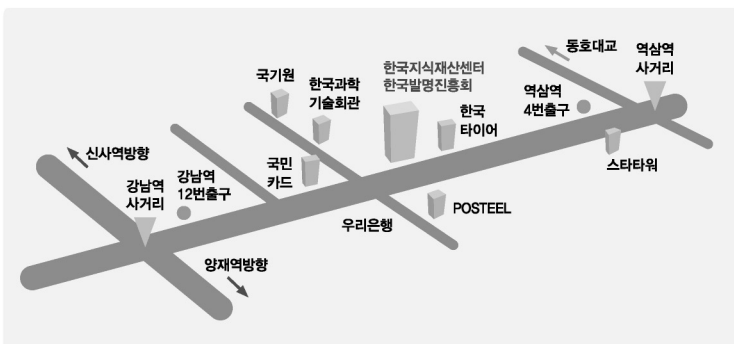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자):교육비의 약 15% 환급
- 특허청(중소기업 대상):교육비의 80% 환급
- 특허청 예산 소진시 교육비 지원 조기마감 가능
- 환급증북 지원 불가, 특허청 지원 대상자 회원사 할인 제외

* 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미국 특허출원서 작성 및 침해회피 전략)실무 과정



오시는 길

교육장 안내



▲ 제1교육장

▲ 제2교육장

▲ 교육생 휴게실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T3)」 운영계획 공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추진하는 「2012년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 인력인 대학 교수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 중장기적 대학별 자립형 지식재산 강의 기반 구축

■ 주요내용

대상	과정명 (일정)	프로그램 (내용)	
기본	찾아가는 과정	지식재산권 전반적 내용 4월 ~ 6월	국내·외 지식재산 제도, 특허명세서, 특허정보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및 사업화 방안,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상반기 단기집중 과정	지식재산권 기본 4. 16 ~ 4.18	창의적 연구개발 기법(Triz) 및 지식재산권(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기본
		디자인·상표·저작권 4. 18 ~ 4. 20	디자인보호법(디자인요건, 특수디자인, 보호 및 활용), 상표법(상표요건, 상표권의 보호 및 활용), 저작권(저작권법 개요, 저작권의 보호 및 활용 등) 개요
중급	여름 단기집중 과정	특허정보조사·분석 8. 6 ~ 8. 8	특허검색 DB 소개 및 활용 방법, 특허기술 검색시 작성 노하우, 특허 data 가공방법 및 특허 분석 방법 (개인프로젝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강한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8. 8 ~ 8. 10	특허요건, 명세서의 개요,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및 분석, 주요 거절 이유 소개 및 대응방법 (개인프로젝트: 특허 청구범위 작성)
	하반기 단기집중 과정	지식재산 사례 연구 10. 22 ~ 10. 24	전공 분야별(기계,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지식재산 사례 소개 및 학습 (개인 프로젝트: 사례 연구 및 의견 제시)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라이선싱 10. 24 ~ 10. 26	특허기술 가치평가 방법 소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팀프로젝트: 전공 분야별 특허기술 가치평가)
고급	겨울 단기집중 과정	지식재산 마스터 과정 12. 11 ~ 12. 14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교수법 소개 (개인 프로젝트: 한학기 분량 강의안 제작)
	해외 심화과정	IP for Professors 7. 15 ~ 7. 26	교수들이 알아야할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동향 소개 및 해외 우수 IP 기관 방문
특별 (별도공고)	학회 프로그램 운영 (연중, 10개 학회)		학회 맞춤형 지식재산 세션 운영 (학회,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설계)
	지식재산 특강 운영 (연중, 3개 내외 대학)		대학 교수, 연구원, 산학협력단 직원 등 지식재산 관련자 대상 세미나 운영

* 상기 교육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인원, 장소 등은 각 과정 시작 1개월 전 공지

■ 교육방법

- 찾아가는 과정 : 대학 방문 교육(4학교 선정, 1주~8주 강의)
- 단기집중 과정 : 주제·단계별로 특화된 집합 교육 프로그램(과정별 2일~5일)
- 해외심화 과정 : 해외 우수기관 연수기회 제공
- 학회 프로그램, 특강 프로그램 : 별도공고 예정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각 과정 시작 1개월 전 홈페이지 공고(www.kipa.org / www.iphuman.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iphuman.or.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T. 02-3459-2808, 2813)



2012년 발명교육 우수사례 수기 공모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교육을 통하여 개인 또는 사회적 역량을 발전시킨 우수 사례를 발굴, 소개함으로써 발명교육의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응모대상

- 발명교육을 받아본 경험 혹은 발명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례자 또는 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

■ 공모기간 : 2012. 6. 1(금) ~ 7. 31(화) 24:00

■ 공모내용 : 발명교육을 통해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이 계발된 사례

- 발명교육 체험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계발된 학생의 사례
 - * 발명교실, 발명대회 등을 통해 계발된 역량이 성격 변화, 장애극복, 학업성취도 향상, 진학 및 창업 성공 등으로 연계된 사례
- 발명을 통한 학생의 변화를 체험한 발명교육 지도경험을 가진 교사의 사례
 - * 우리 학교·동아리 단위로 참가한 유수의 발명대회 수상 과정을 통한 성취 사례 등
- 학창시절의 발명교육을 기반으로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발해나가는 사회인의 사례
 - * 특허 등 다양한 지재권을 보유한 직장인, 발명 연계 사업 창업자, 기술이전 사례, 발명 교육과 연계하여 우수 연구 논문을 작성한 사례 등
 - ※ 발명교실, 발명대회 등의 발명교육과 연관된 경험을 통한 변화사례 위주 선발 예정

■ 공모방법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발명교육교수·학습지원센터(www.jp-edu.net)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 발명교육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나눔터] 내 발명교육 우수사례집 증보판 '발명은 나의 힘' PDF파일 참고바람

■ 선정자특전

- 사례 선정자(응모자) 대상 소정의 상품 제공 예정
 - * 심사회의 결과, 목적에 부합하는 원고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의 주최·주관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예정
 - * 지역 발명인재육성협의회 평가 시 가점, (학생)발명장학생 지원 시 가점, (교원) 발명교육대상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 발명교육교수·학습지원센터(www.jp-edu.net)를 통해 선정 사례 확산
 - * 추후 필요 시 발명교육 우수사례집 출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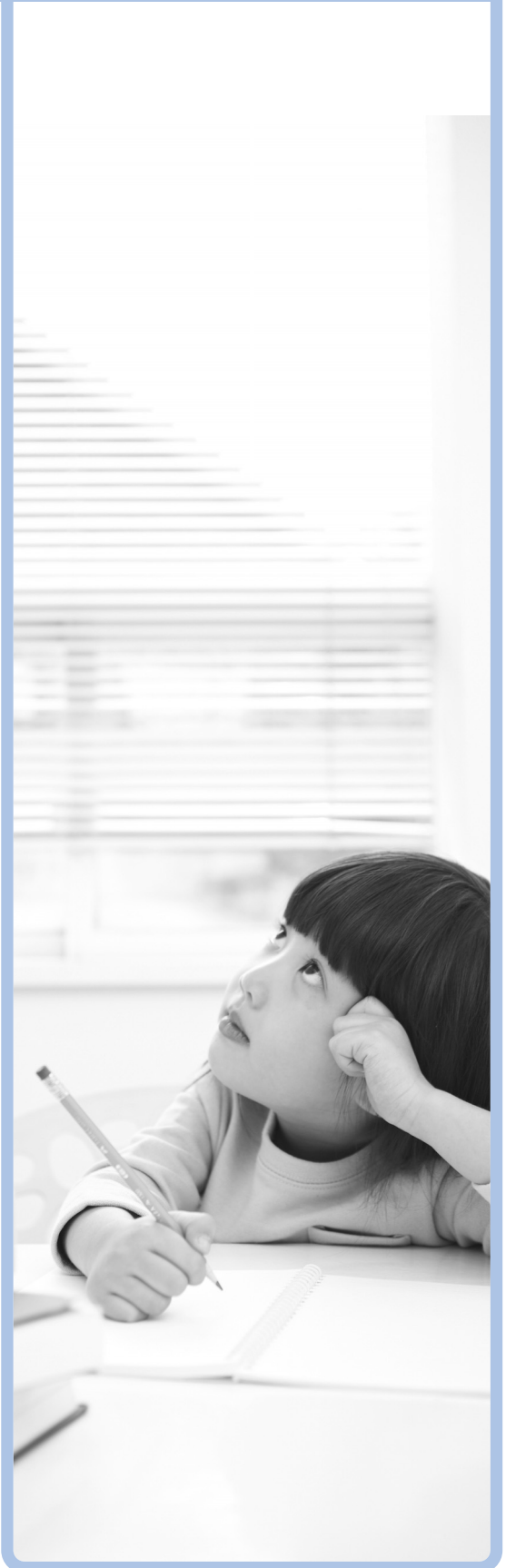
■ 결과발표

- 2012. 8. 22(수), 개별연락 및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주최 / 주관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접수 및 문의

- 제출처 : 담당자 이메일 접수(sjkim@kipa.org)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발명교육 우수사례 수기 공모 담당자 (02-3459-2718)



2012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이란?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심의 시 대상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창업투자회사* 단독신청 또는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 공동신청

* 신청대상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별도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타 국내 금융기관 및 엔젤투자조합을 포함

**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유 또는 특허기술 사업화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특허청 지정 9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창업투자회사가 대상기업의 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

* 투자결정 시 주된 고려사항인 지재권 경쟁력 분석(특허무효가능성 및 침해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가능

-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건당 최대 13.5백만 원) (VAT 별도)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접수기간 : 2012. 2. 15부터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첨부양식)를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출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이동준 주임(Tel: 02-3459-2943, E-mail: djlee@kipa.org)

주한중 전문위원(Tel: 02-3459-2945, E-mail: hjju@kipa.org)

※ 상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란 참조



"아이디어가 선풍타격이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교육」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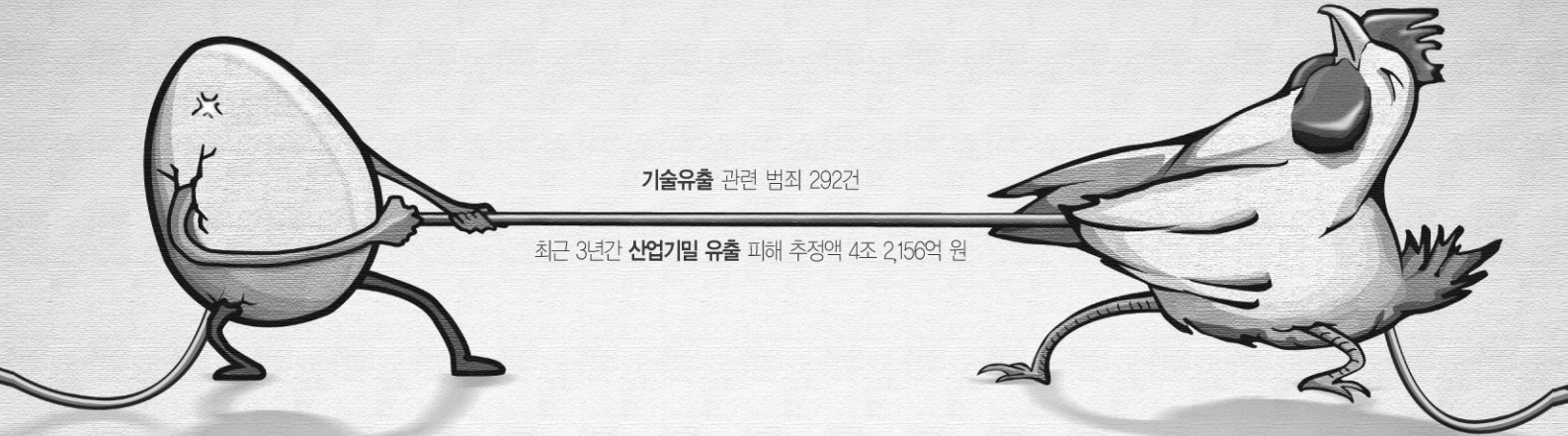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사업안내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기술유출 관련 범죄 292건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 피해 추정액 4조 2,156억 원

아직까지 분쟁 중?

이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www.tradesecret.or.kr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 도용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의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명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
-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전자파일을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활용대상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실적, 재무자료,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 노하우, 조리법 등 원본 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Column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슬픔

‘나가사키 짬뽕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신간안내

Column

상표권이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슬픔

홍 길동이 살았다던 조선시대의 법은 '천민의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양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슬픈 천형' 과도 같은 굴레였다.

비록 그 자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귀엽다손 치더라도 사회는 그런 신분관계를 요구했기에 울면서 아버지를 나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런 슬픈 사연을 책과 드라마로 접하며 가슴 찢어 올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

누구의 탓인가? 조선이라는 미개한 나라를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아픔으로 치부할 것인가?

그렇다면 인권이 존중되며 평등하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아픔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변명하고 설명할 것인가?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아픔이 있기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것이다.

상표권이라는 지식재산의 세계가 바로 그 현장이다. 1등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삶의 경쟁의 장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제품을 부르는 이름인 것이다. 좋은 이름이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그 제품의 우수성을 담고 있는 이름일 것이다.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옛날에 자식이 태어나면 그 부모들은 그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다. 좋은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공에게 좋은 앞날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사람의 이름과 제품의 이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이름은 한 사회 안에 동명이인들이 여러 사람 존재해도 법으로 허용되나, 제품의 이름 즉 상표권은 그 나라 하늘 아래 하나만 존재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점적인 이름을 누가 부여하는가? 바로 이런 이름을 갖고자 하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신청하면 특허청은 이를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결정할 때 중요한 원칙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그 이름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런 원칙을 선출원주의라 한다.

좋은 제품에 좋은 이름을 붙이고 싶다면 남보다 빠른 발걸음과 선택이 중요하며, 반드시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지 먼저 이름 지어 사용했다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자.

여기에 비극의 시작이 있다.

이름은 먼저 지어 불렀건만 특허청에 출원을 하지 않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놓고 부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접하고 나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더욱 낭패는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그 이름이 필요한 나라마다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다. 우리나라 마트의 생수코너에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만든 삼다수라는 이름의 생수가 보란 듯이 진열되어 다른 생수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제주 삼다수라는 생수를 찾아볼 수 없다. 사연인즉 이렇다. 제주개발공사가 해외 상표권 획득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을 때 앞을 내다본 한국인이 이 상표를

먼저 중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진짜 삼다수는 중국에서 삼다수라고 부르지 못하며 제주화산암반광천수라는 이름으로 중국인들에게 자신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인들은 무비자로 제주도를 드나들면서 삼다수 생수 맛을 보고 그 브랜드에 익숙해 있으며 자신들의 본토에서도 이 생수를 즐기자 하나, 아무리 찾아도 삼다수가 보이지 않는다면....아, 공식통계로만 13억이 넘는 저 사람들이 하루에 일 인당 한 병만 소비한다면....계산이 여기에 미칠 때 아쉬움은 극에 달한다.

이렇듯 상표는 타인과 나를 구별해주는 이름표이며 나의 재산임을 세상에 알리고 지켜주는 울타리일진대, 이렇게 중요한 울타리도 없이 눈뜨고 코 베어가는 무한 경쟁의 전쟁 속에 당신을 내어 놓을 것인가?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의 잘못이 아닌 그 시대의 가슴 아픈 현실의 장벽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상표를 자신이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 타인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산업재산권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는 것은 힘이며 실행만이 최선이다.

2012. 7 |



‘나가사끼 짬뽕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
여부 및 판례 분석





‘나가사끼 짬뽕’. 한국요쿠르트와 ‘꼬꼬면’을 시작으로 라면 업계에 ‘하얀 국물’ 라면의 대세를 이어온 삼양식품 인기 라면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나가사끼 짬뽕’을 2011년 말 (주)삼양식품이 아닌 개인이 상표 등록 출원을 하여 일본 나가사키현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나가사끼 짬뽕’ 뿐만 아니라 ‘나가사끼’를 포함하는 명칭의 출원을 조사해 본 결과, 요식업(제43류) 및 음식품(제30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개인이 2011년 말 출원한 ‘나가사끼 짬뽕’ 등의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9월께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가사끼’는 해외의 지리적 명칭으로서 우리나라에도 꽤 잘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심사에 들



‘나가사끼 짬뽕’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검색정보		검색보기 (1 - 7 of 7)		*전화 : 2,602,1482		
번호	견본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자	상태 상품분류
1	나가사끼 짬뽕	4020110066620 (2011.11.26)				출원 30
2	나가사끼 우동	4020110066661 (2011.11.26)				출원 30
3	 나가사끼 아구·해물짬뽕	4020110060761 (2011.11.02)				출원 20
4	 나가사끼 아구·해물짬뽕	4120120002624 (2012.01.27)				출원 43
5	나가사끼 우동	4120110039812 (2011.12.09)				출원 43
6	나가사끼 짬뽕	4120110037662 (2011.11.26)				출원 43
7	나가사끼	4120110037671 (2011.11.26)				출원 43

어가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나가사끼’가 아닌 ‘나가사키’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음과 같이 출원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나가사키’가 일본 규슈 북서부에 있는 현 또는 현청 소재지인 Nagasaki의 한글 음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 거절결정되었다. 따라

검색정보		검색보기 (1 - 2 of 2)		*전화 : 2,602,1482		
번호	견본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자	상태 상품분류
1	나가사키	4020060056889 (2006.11.09)				거절 30
2	나가사키 짬뽕 長崎ちゃんぽん	4520070004454 (2007.10.10)				거절 30.43

서, 이번에 출원된 ‘나가사끼 짬뽕’ 역시 동일한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원인명칭 : 주 소
대리인명칭 : 주 소
출원번호 : 40-2006-0056889
상품(서비스업)류 : 제 30 류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상표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또는 보정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2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
본원상표는 일본 규슈(九州) 북서부에 있는 현 또는 현청 소재지인 長崎 즉 Nagasaki의 한글 음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끝.

본 호에서는 ‘나가사끼 짬뽕’의 등록 여부와 관계 있는 상표 부등록 사유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법적 기준과 국내 및 해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는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표법 규정 및 상표심사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심사기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구체적인 적용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범위를 국가명, 국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변화가 등의 명칭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사례들 중 상표 ‘뉴욕’, ‘북경오리’, ‘MANHATTAN’, ‘HALLA(한라)’, ‘장충동왕족발’, 종로학원 등은 모두 본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는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지 여부'가 되는데, 국내 및 해외의 지리적 명칭에 대한 몇몇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관련 판례들

이건 상표	사건 번호
 <p>상표출원 제2004-20627호</p> <p>소주, 인삼주, 약주</p>	<p>심판원 2006. 9. 29. 2005원5609 심결</p> <p>특허법원 2007. 5. 3. 선고 2006허9807 판결 확정 (심결 지지)</p>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만일 해당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본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지리적 명칭을 제외한 부분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된다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상기 상표 '도형+ 천하명주 + 한라산'은 얼핏 보기에는 '한라산' 이외에 다른 문자 부분도 있고, 도형도 함께 결합되어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으나, 상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라산' 이외의 문자 부분은 '증류원액첨가', '천하명주', '株式會社 漢孛山', 'since 1960' 등은 지정상품에 대

한 설명적 표시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매우 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전체 상표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형 부분 역시 산을 보통의 방법으로 형상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표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보여지므로 심판원과 법원 모두 해당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이건 서비스표	사건 번호
<p>경남대학교</p> <p>KYUNGNAM UNIVERSITY</p> <p>慶南大學校</p> <p>서비스표 등록 제113018호</p> <p>교육지도업, 교수업, 교육시험업, 교육정보제공업, 체육교육업</p>	<p>심판원 2010. 9. 30. 2009당2447 심결</p> <p>특허법원 2011. 7. 8. 선고 2010허8191 등록무효(상) 판결 확정 (심결 취소)</p>

상기 서비스표 '경남대학교' 중 '경남' 부분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하나인 '경상남도'의 약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대학교'는 보통명칭에 불과하며, 하단에 병기된 영문과 한자 부분 역시 '경남대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영문 및 한자 표기 방법에 해당되므로 이건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라 판단하였다.

본 사안의 주된 쟁점은 '경남대학교'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였다.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상표 등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대학교'가 오랫동안 널리 사용됨으로써 해당 서비스표가 관련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되면 상표 등록이 허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경남대학교 측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표장은 도형이

결합된 경남대학교 표장이어서 실제로 사용한 상표의 형태와 이진 상표의 형태가 달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인정 받을 수 없었다.

이진 서비스표	사건 번호
 서비스표 출원 제2004-26320호 항공운송업	심판원 2007. 4. 25. 2006원4347 심결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허5529 판결 확정 (심결 지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상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진 서비스표 ‘EMIRATES’는 ‘에미리트’ 또는 ‘에미레이트(즈)’ 정도로 호칭될 것인데, 본 건에서는 이진 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국가명 ‘아랍 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으로 즉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증거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진 서비스표의 한글 음역인 ‘에미리트’ 또는 ‘에미레이트(즈)’가 ‘아랍 에미리트연합’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예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진 서비스표는 국가명 ‘아랍 에미리트연합’의 약칭이라 인식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진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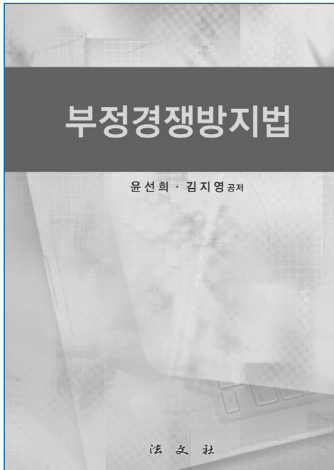
결

상술한 바를 통해 볼 때 ‘나가사끼 짬뽕’은 결국 일본

나가사끼(키) 현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나가사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한다고 해서 바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합된 다른 문자 부분이나 도형 부분이 식별력이 있거나 지리적 명칭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지리적 명칭이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하지 못한다거나 아직 현저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지리적 명칭일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허용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의 사용을 통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므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상표 등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012. 7 |



부정경쟁방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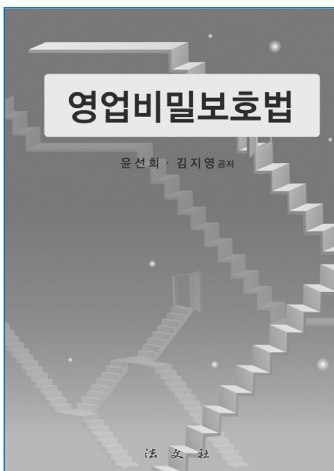


본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론과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학도뿐만 아니라 법률 실무가의 이해를 돕고자 집필되었다. 조문을 중심으로 기술한 기존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부정경쟁행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 법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국내외의 유력 학설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소개·정리함으로써 이론서로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는 부정경쟁행위 법리를 기초로 영업비밀보호법리를 소개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서가 간과하고 있던 부정경쟁행위 법리와 영업비밀보호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무 과정에서의 제도 운영 상황과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영업비밀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본서는 비밀유지명령제도 등과 같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합의사항에 따른 2011년 12월 2일 개정법(법률 제11112호, 일부 개정 2011.12.2)에 도입된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본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법학도뿐만 아니라 법률 실무가의 이해를 돕고자 집필되었다. 단순한 조문의 설명에 머물던 기존서의 틀에서 벗어나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과 보호 법리에 대한 역사적 전개를 소개하는 등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이론서로서 뿐만 아니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다루어진 영업비밀의 보호와 분쟁 관련 판례를 정리함으로써 법률 실무자들이 실무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새로운 제도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비밀유지명령제도 등과 같이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의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개정된 산업기술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도기술, 신기술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Report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

한중 FTA에 따른 대응 방안 분석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인 검토 및 제언

OLED 표장의 상표등록 가능성

특허분쟁에서의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전략에 대한 고찰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PCT 국제특허의 개별국 진입 국가 선정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통풍을 치료하는 약초와 특허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Report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

EU 통합특허규정의 주요내용

1 EU 통합특허 관련규정

전제부

우선 전제부에서 EU특허의 목적과 수행기관 및 성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EU특허의 목적은 자유로운 물품교역의 장애를 제거하고 경쟁이 왜곡되지 않는 역내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용이하고 저비용의 단일제도를 창설하여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위조와 침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을 기술한다.

EU특허는 EPO의 전문성을 이용할 예정으로 그 처리를 EPO가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특허 심사 및 허여는 EPO만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개별 회원국 특허청은 EPO와의 강화된 파트

너십을 활용하여 EU특허의 접수, 특허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및 기타 출원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EU특허는 어디까지나 제3의 선택으로서 유럽특허 및 회원국 국내특허와 병존함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출원인은 이들 3가지 출원 루트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본문

EU특허는 EPO에 의하여 허여되는 유럽특허로서 EU를 지정국으로 하는 것이라 정의되며 EU 전체에 동일 효력이 부여되는 일체적 성격을 기술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 또는 승계인으로 규정하고, 선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

권으로서의 특허권을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EU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만일 실시권 허여 의사를 EPO에 등록할 경우에는 연간 갱신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허권의 실시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EU특허와 동일 발명이 동일 발명자에 의하여 동일 출원일로 국내특허로 접수될 경우, 경우에는 회원국 국내 특허는 무효라고 규정함으로써 EU특허와 국내특허로 이중적 보호를 금지하고 있으며, EU 특허 허여 전까지 유럽특허로 전환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 통합특허의 행정청

통합특허의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공식 EU 기관인 OHIM이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특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EPO가 통합 특허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하여 출원, 심사 및 특허 부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국 특허청은 자국에 직접 제출된 특허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수행하되, 통합특허와 관련된 출원을 안내하고 출원 접수하여 EPO에 송부하며,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의하였다.

상기 EU 이사회의 2009년 12월 결정문은 EPO와 회원국 특허청 간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심사 및 결정에 있어 EPO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는 강화된 협력관계(enhanced partnership)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PO는 38개 EP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유럽특허출원과 더불어 새로이 27개 EU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특허 출원을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EU 통합특허의 규정 초안은 EPO 산하 선정위원회(Select Committee)가 특허유지 수수료(renewal fees)를 결정하고, 모든 수수료 수입의 50%를 EPO가 가져가고 나

머지 50%의 수입은 EPC 회원국 간 분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EU특허가 발효되면 EU특허의 심사 및 등록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할 유럽특허청(EPO)과 EU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여 질 것으로 예측된다.

3 EPO의 특허문헌 번역서비스(Patent Translate)

EU 통합특허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는데 영, 불, 독 이외의 언어로 출원하는 EU회원국 국민은 번역비용을 반환받으므로 출원단계에서부터 출원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특허청(EPO)은, 영어 등 7개 언어로 특허문헌을 번역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12. 3.1.부터 유럽특허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까지 한·중·일, 러시아어와 유럽 28개국 언어를 포함하여 총 32개 언어에 대한 특허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문헌에 대한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서비스는 여러 언어로 기재된 특허문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유럽특허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유럽특허청의 특허번역 서비스 제공은, 바티스텔리 유럽특허청장이 특허심사의 품질향상과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회원국 언어번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해 온 중점 사업이며, 구글의 번역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1단계로 유럽 특허문헌의 약 90%를 차지하는 영어와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상호 간 번역을 2012. 3월부터 제공하고 2014년 말까지 유럽특허협약(EPC) 회원국 28개 언어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특허번역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⁸⁾

특허번역(Patent Translate) 서비스는 유럽특허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자체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 'Espacenet'에 집적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동 번역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Espacenet"에 접속하여 해당 특허를 검색한 후, 특허청구범위(claims), 초록(abstract), 발명의 상세한 설명(description) 등 번역할 부분을 선택하고 '특허번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마우스 조작을 통해 번역 이전의 원문을 동시 참조할 수 있으며, 번역 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할 수도 있고, 직접 유럽특허 공개용 서버(publication server)를 통해서도 특허번역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구글 간 특허번역(Patent Translate)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은 2011.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유럽특허청이 구글에 제공한 수십만 건의 기 번역된 고품질 특허정보는 구글의 번역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되었다. 유럽특허청은 향후 추가될 언어에 대한 코퍼라(corpora) 데이터베이스를 구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EU 통합특허법원 조약초안의 주요내용

2011. 12. 5. EU는 경쟁력 이사회를 개최하여 EU 단일특허 도입, 공통특허법원 설립 등 EU 특허개혁을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현 의장국인 폴란드가 작성한 법안관련 안건의 대부분에 합의하였다. EU 이사회의 회원국들은 상기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① EU 공통특허법원의 2심법원인 항고법원 설치 지역 : 룩셈부르크
- ② 특허분쟁의 조정·중재센터 설치지역 :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 ③ 공통특허법원의 판사 등을 위한 교육·연수원 설치지역 : 헝가리

다만, EU 공통특허법원의 운영예산 조달방안,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을 전담하는 1심 법원인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의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1 통합특허법원의 구성

EU 통합특허의 재판관할문제는 별도 전속법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법원을 이용하는 방안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상기 2009. 12. 4. EU이사회 결정문은 유럽특허와 EU 통합특허의 침해 및 무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한 배타적 전속 관할권을 갖는 별도 특허법원(EEUPC)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EUPC는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항고법원(Court of Appeal) 및 등록처(Registry)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또는 복수회원국 그룹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으로 구성된다.

1심 법원 중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과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의 재판부는 반드시 다국적 판사들로 구성되어 최소 1명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진 판사를 포함하여야 하고, 무효항변 또는 일방 당사자 요청시 기술판사의 추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법원 중에서도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50건 미만인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국적 판사 풀에서 2명의 판사와 1

명의 회원국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50건 이상인 경우, 1명의 다국적 판사와 2명의 회원국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만약 연간 처리사건이 50건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의 회원국 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중앙법원의 재판부는 2명의 법률판사와 1명의 기술판사로 구성된다. 통합특허법원의 조약 초안은 항고법원의 경우, 3명의 법률판사와 2명의 기술판사를 포함하는 재판부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통합특허법원은 7년의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이 지나고 나면, 각 회원국 법원들은 유럽특허 관련 소송을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허소송의 재판관할(jurisdiction)은, 침해가 발생한 지역 법원 또는 피고의 주소지 법원,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무효인 경우 중앙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회원국 또는 지역법원에 제소된 침해소송과정에서 반소(counter claim)로서 특허무효 항변이 있는 경우는 직접 그 법원이 무효여부를 심리하거나, 무효판단 부분만 중앙법원으로 회부하거나, 당사자 동의하에 사건 일체를 중앙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의 무효쟁점을 중앙법원으로 회부함으로써 특허침해 및 무효 소송의 관할 집중을 저해하고, 일반적으로 침해소송의 결과가 무효소송의 결과보다 빨리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자가 침해소송의 결과에 승복하여 특허권자와 합의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앙법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특허침해자가 EU 회원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침해자가 공동침해를 한 경우, 중앙법원에 재판관할을 부여하거나, 또는 피고의 선택에 따라 소를 중앙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1심 법원에서 사용할 언어는 소가 제기된 법원이 소

재한 국가의 언어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유럽특허협약 상의 공식언어(영어, 독어, 불어)이며, 중앙부 법원의 사용언어는 권리가 부여된 특허의 언어이고, 항고법원의 언어는 1심 법원의 언어 또는 권리가 부여된 특허의 언어이거나, 당사자 합의에 따른 유럽특허협약 상의 공식언어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통합특허법원 설립 조약초안의 제18조에 의하면, 동 법원이 기본적으로 법원 수수료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 시설과 인프라, 판사 및 직원채용 등 초기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결과적으로 EU 회원국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특허재판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독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비해 3인 합의체에 의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조약초안은 당연히 소송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초기 법원설립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침해소송의 수수료가 10만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⁹⁾이다.

특히, EU 통합특허법원의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사항은 동 조약 초안의 제6조 내지 제8조에 관한 사항이다. 상기 조항들에 의하면 통합특허법원이 특허실체법의 해석(예 : 특허침해 여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논란의 핵심은 사실상 특허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이 ECJ에 특허침해 등 실

8) 최근 유럽특허청은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특허문헌의 기계 번역을 위하여 최근 연쇄적으로 중국 특허청(SIPO) 및 일본 특허청(JPO)과 중국어, 일본어의 영어 번역을 위한 MOU를 2011.11.29 및 2012. 2.6. 각각 체결하였으며, 2014년까지 한국어-영어 번역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9) Unifying patent litigation in Europe, Rowan Freeland and Paul England, PMLive published on 2012.5.9.

체법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현재 유럽상표청(OHIM)에서 관할하는 유럽공동체 상표, 디자인에 관한 법률분쟁 시 EU 법규에 관한 합치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ECJ에서 판단하여 왔으나,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일부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무엇보다도 ECJ에 의뢰 시 최소 1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ECJ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EU 통합특허제도의 출범 이후에도 회원국들이 기존의 특허제도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동 기간 중에는 출원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EU 통합특허를 출원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유럽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2 중앙법원 유치전 가열

지난 30여 년간 협상을 거듭해 온 EU 단일특허제도 탄생을 위한 개혁안은, 대부분의 안전에 대해 25개 회원국(언어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스페인, 이태리 제외)의 합의를 도출하여, 당초 EU 회원국 간 2011. 12월 경 합의가 예상되었지만,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1심법원인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의 유치를 놓고

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자국 유치의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도출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현재 EU 단일특허의 중앙법원의 유치를 위해 런던, 뮌헨, 파리가 경쟁 중이다. 런던은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를 위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의 주요 고객이 미국 기업임을 고려할 때 언어적 이점을 갖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EU 국가들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 유로존 위기시 영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따라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영국은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분리를 허용한 현재의 조약 초안이 영국 중소기업이 비용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특허권자의 법정지 선택(forum shopping)을 가능케 하여 독일 법원의 소송집중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이러한 우려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앙법원을 반드시 런던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¹⁰⁾

뮌헨은 유럽특허청, 독일특허청, 독일특허법원, 막스 플랑크연구소 등과 지재권 전문로펌들이 다수 소재하여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허청, 특허법원 등 유럽의 특허관련 주요기구들이 독일에 집중되면 유럽의 지재권 제도가 독일 위주로 정착될 것을 우려하는 일부 회원국(영국 포함)들의 견제와 반대가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중앙법원의 유치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런던과 뮌헨의 치열한 경쟁 및 상호견제의 구도는 상대적으로 반대세력이 적은 파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지재권 법률시장이 크지 않은 파리에 중앙법원이 설립되면, EU의 특허변호사들이 파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요 이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파리는 런던, 뮌헨에 비해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약점이다.

3개국은 자국 법조계의 로비와 후원을 바탕으로 통합특허법원의 중앙법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이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프랑스가 다소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법원의 설치지역과 관련한 협상이 신속하게 타결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종 유치경쟁에서 탈락될 2개국 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1심법원인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의 유치를 놓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자국 유치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특허소송의 핵심법원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과 함께 동 법원의 유치에 따른 로펌의 설립, 법조 비즈니스의 활성화 등 법조 비즈니스에의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¹¹⁾

한편 자국 언어가 공식 언어에서 제외된 것을 이유로 EU 단일특허 체제에 불참을 선언한 이탈리아의 동 시스템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밀라노가 동 법원의 유치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최근 동 체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가 경합 중인 EU 공통특허법원(중앙법원)의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법원의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EU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으로서 호세 마누엘 바로소(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사소한 불일치 건으로 인해 유럽의 혁신과 성장을 증진할 개혁 입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데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3국 정상들에게 신속한 합의안 도출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정상들은 2012. 1. 30. EU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EU 단일시장의 완성을 위하여 EU 특허개혁안

의 잔여쟁점(무효사건 전담 1심법원인 중앙법원의 설치지역)에 대한 합의를 2012. 6월까지 도출하지는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EU의 특허개혁법안은, 중앙법원의 설치지역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11년 폴란드 의장국 체제 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EU의 2012년 신임 의장국인 덴마크는 EU 특허제도 개혁관련 입법안을 주요 과제로 처리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고, 최근 EU 정상들이 EU 특허제도 개혁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동 입법안은 EU 회원국 간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2년 중으로 유럽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음 호에 계속

2012. 7 |



박진석 특허관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10) 2012.5.9.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의 유럽조사위원회(Euro-pean Scrutiny Committee)는 자국의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함을 지적하면서 통합특허법원의 설치를 위한 현 조약안의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1) 2011년 발표된 하그리브스 보고서(Hargreaves report)는 영국의 공통특허법원 유치로 인해 자국 로펌들이 약 21억 파운드(3조 8천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중 FTA에 따른 대응 방안 분석

한미 FTA

한-미 FTA, 한-EU FTA로 인하여 한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장 선진화된 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결국, 한중 FTA는 한미 FTA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할 사항보다도 우리가 중국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이미 한미 FTA가 체결된 이상, 지재권 분야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한중 FTA 합의를 한미 FTA 수준으로 끌고 갈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재권 분야의 예상 요구 사항의 격차는 비지재권 분야에서의 협상 지렛대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한미 FTA에서 합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특허건수
특허	등록지연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제도
	공지예외 주장 기간의 연장 (6개월▶12개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상표	불실시에 의한 특허취소제도 폐지
	전용사용권 설정의 등록 요건 폐지
	증명표장제도 도입
저작권	소리, 냄새 상표제도 도입
	영화 상영권의 캠코더 촬영 금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전자출판의 배타적 권리설정 가능
기타	비친고죄 범위 확대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한중 FTA 예상 쟁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분야

특허법 분야에서 우리 측의 주요 요구 사항은 한미 FTA에서 합의된 사항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ii) 공지에외 주장제도의 기간 및 요건, iii) 무심사 등록된 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권리행사 시 기술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 제도, iv)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v) 불특허 범위에 대한 요건, vi) 심사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측 요구 사항은 유전자원 발명에 있어서 유전자원의 입수 출처 공개 의무와 관련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우리가 한미 FTA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사항들이 그대로 중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우리기업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제약 업계의 상당수는 제네릭 의약품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중국 내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 강화가 과연 우리 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약 업계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항이라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다른 분야에서 요구를 관철시키는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전략을 구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나) 한편, 현재 중국 전리법에서 외국인의 권리 획득의 가장 큰 함정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 전리법의 공지에외주장 제도의 엄격한 적용 요건은 반드시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09년에 전리법을 개정하면서 신규성 요건을 국내주의에서 국제주

의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공지에외주장에 대한 요건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한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두었는데, 이로 인하여 외국인이 자국에서 선공지 후 공지에외주장을 통하여 출원한 경우 원천적으로 중국에서는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권리권 획득이 원천 차단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 따라서, 공지에외주장 기간의 6개월에서 12개월 연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지에외주장 대상 요건을 중국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의 폐지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중국 전리법은 발명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을 전리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발명특허의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지만,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기초적인 사항만 심사하고 나머지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실제적인 사항은 심사하지 않고 등록시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전, 우리나라 구 실용신안법이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시절에는 무심사로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 전 반드시 기술평가 청구를 하여 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중국은 2009년 3차 개정 전리법 초안에서는 무심사 등록된 실용신안·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최종 통과된 법률에서는 법원이 기술평가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통과시켜 사실상 무심사 등록된 실용신안·디자인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현재 이러한 무심사등록 권리의 자유 행사 규정은 중국 내에서 다수의 실용신안권 분쟁을 양산하고 있는 폐단을 낳고 있으며, 중국 로컬 기업에 의한 무심사등록 실용신안권 남용으로 많은 외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중국 지방인민법원의 자국기업보호주의, 지방보호주의와 편승되어 이러한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소송 남용에 의한 피해를 최소

화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중국의 본 규정이 수정되도록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 외에도 한미 FTA에 의해 끌어올려진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중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얼마나 일치시키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이나 BM특허 발명의 인정 요건의 완화 여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일치 여부, 심사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 등이다.

상표분야

상표 분야에 있어서, 우리 측의 예상 요구 사항은 i) 소리, 냄새 상표의 인정, ii) 지정상품 분할 출원, iii)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보정서 제출 기회 인정, iv) 주지저명상표의 인정 요건, v) 한류 스타의 초상권, 성명권의 상표법상 보호 방안 강구, vi)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측 요구 사항은, 저명상표에 대한 사용금지 효력 인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 소리, 냄새 상표의 경우 한미 FTA에서 미국의 요구를 우리 측이 수용한 사항으로서, 이를 한중 FTA에서 우리가 관철시킬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중국의 경우, 중국 본토는 소리, 냄새 상표를 인정하지 않지만, 홍콩은 소리, 냄새 상표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도 불일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전격적인 양보를 얻어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나) 중국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결정을 하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며, 반드시 등록시켜야 하는 상표가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평심위원회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중국의 3차 상표법 개정안에서 의견서, 보정서 제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초안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FTA에서 무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이 규정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양보를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이 FTA 협상 전에 이미 개정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철저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

다) 한류의 콘텐츠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류스타들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이들의 상표법적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콘텐츠 수입이 걸린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한 협상 줄다리기가 필요한 항목으로 예상된다.

라) 우리나라는 상표의 주지·저명한 상표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타 상표 등록배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등록 상표라고 할지라도 주지·저명상표의 경우에는 타인의 선출원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효력(상표법 제7조 1항 10호 11호, 12호)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차원에서 등록배제의 효력을 비유사 상품 영역까지 일부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저명상표의 보호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반드시 분쟁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 저명상표로 인정을 받아야 저명상표로서의 등록배제효력 또는 사용배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규정에 대한 조화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분야

저작권 분야에서 우리 측의 주 요구 사항은 한미 FTA 합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그 배치와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저작권 분야에서 우리 측에 요구할 사항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i) 민간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 ii) 곡예, 잡기 저작물의 보호, iii) 수정권, iv) 판권권 등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는 서로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우리 측 요구 사항으로는 i) 소송에서의 법원의 비밀유지명령(한미 FTA 합의 사항), ii) 지재권 사건의 3심 중심제 적용, iii) 가처분 제도의 개선, iv) 지재권 침해소송에 있어서 담보금(공탁금) 제공에 대한 보증보험의 활용, v)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의 여부 고려 폐지 등이다.

한편, 중국 측 요구 사항으로는 i)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의 강화, ii) 세관에서 수출 금지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가) 중국은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4단계 법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재권 사건의 경우, 중급인민법원에서 시작하여 고급인민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2심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 기업에게 있어서 지방보호색채가 가장 약한 최고인민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중국에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 중심제를 채택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하나의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가처분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소제기전 임시금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권리자는 침해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임시 금령을 담보 금액과 함께 신청하면 법원은 심리 후 48시간 이내에 가처분 명령에 준하는 임시 침해금지 명령을 내린다. 권리자는 침해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15일 이내에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해금지 명령은 취소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고, 가처분이 제기되면 피고에서 답변 기회 및 변론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 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소제기 전 임시금령은 권리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기업의 실익을 따져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 한가지 중요 쟁점 사항 중 하나는 중국은 전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시 침해자의 고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침해자의 손해배상액의 감경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이 제도로 인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만족할만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지 못해 상처 뿐인 영광의 승소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폐단을 낳고 있다. 실제로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IP 승소율은 높다고 하더라도 외국 기업들이 만족할만한 손해배상은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 수 있는데, 바로 이 침해의 고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해 주는 중국 특유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가 더 많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은 협상에서 폐지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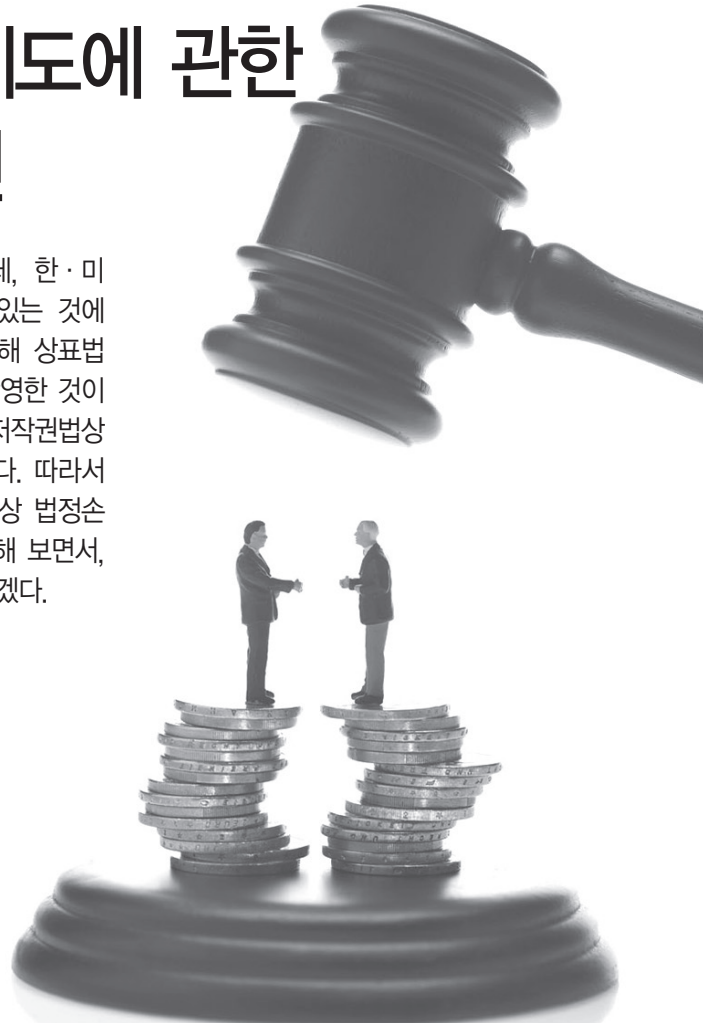
2012. 7 |



유성원
知心 IP&Company 대표변리사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인 검토 및 제언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¹⁾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법정손해배상액의 단위로써 객체적 기준의 문제

문제의 제기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객체적 기준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즉,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상한선하에서 한 개의 상표 및 상품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계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

나, 2개 이상의 상표 등에 대한 상표권의 침해가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고,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것을 각 상표마다 5천만 원 이하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소송 내에서 5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상표에 대해서 다수의 상품들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가지 상품이 아닌 다수의 다양한 상품들에 관하여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통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 1개의 상표와 1가지 종류의 상품을 단위로 하여 5천만 원이라는 법적인 상한선하에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1개의 상표로 보아 1개의 상표로서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A상표에 대해서 “TV, 라디오, 세탁기”와 같이 3가지 종류의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상표권이 확보되어 있는데, 특정인이 이 3가지 종류의 상품 모두에 대해서 상표위조행위를 했을 때에 상표권자가 해당 특정인을 상대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TV에 대한 A상표, 라디오에 대한 A상표, 세탁기에 대한 A상표 각각을 별개로 하여 5,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TV, 라디오, 세탁기”라는 모든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별개로 보지 않고 A상표 자체만을 보고 5,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현행법상 관련 규정만을 보면 일반국민들이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외국의 입법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연방상표법(15 USC §1117(c))에서는 “위조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형태별(per counterfeit mark per type of goods or services)”이라는 문구를 법규정상 명시하고 있다.²⁾ 즉,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형별로 일단 구분을 하고, 그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형별로 위조된 상표 1건을 단위로 해서 법정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개의 상표에 대하여 각각 다른 상품 3건이 법정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면, 상표권자는 해당 3건에

대해 각각 법적인 상한선인 5,000만 원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는 상표와 상품단위별로 위조상표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

저작권법상의 입법례

한편으로, 저작권법상에서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서 법정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저작권법상에서는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선에 관한 객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각 저작물마다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에 관련된 적용규정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소결

이상과 같이 저작권법상에서도 법정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각 저작물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상

1)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2) (1) not less than \$1,000 or more than \$200,000 per counterfeit mark per type of goods or services sold, offered for sale, or distributed, as the court considers just: or
 3) 기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제외국에서도 이렇게 손해배상액의 객체적 기준에 대해서 법규정에 명문화하고 있는데, 역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의 상표법 제31조 제5항에서도 법정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위조상표가 사용된 각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형태별(each type of goods or service in relation to which the counterfeit trade mark has been used)”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법에서 이러한 객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실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운영상 일반국민들에게 그 상한선에 관한 객체적 기준에 있어서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상표법에서도 1개의 상표와 그에 관련된 각 상품 및 서비스업별로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FTA를 이미 체결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이와 같이 미국과 같은 기준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상표법상에서도 5천만 원이라는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객체적 기준을 상표법 내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기준으로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입법례와 같이 1개의 상표를 단위로 하여 그에 관련된 각 상품 및 서비스업별로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손해배상액의 하한선 설정 및 악의적인 침해행위시 상한선의 상향 조정문제

문제의 제기

우리 상표법상에서는 단순한 상표위조행위와 악의적인 상표위조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5천만 원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상표위조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제재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제외국에서의 입법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악의적인 침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정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의 구제는 실

손해를 기초로 하는 전통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⁴⁾ 보상적인 측면과 징벌적 측면 모두를 목표로 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상표법이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주요한 목적은 손해액이 불확실한 경우에 금전적 구제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의 상황하에서 가능한 모든 사실 및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법원이 정해진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에서 재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⁵⁾ 즉, 미국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실손해액의 입증이 불확실함을 보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편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실손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그 법적취지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상표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방향으로 제도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행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상한선만 되어 있고, 하한선이 없다. 이것은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의 후단부분에 따른 경우에, 하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낮은 손해액수를 법원이 책정한다면, 상표위조자에 대한 상표권자의 법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제도의 법적취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한선을 법규정에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입법례

미국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은 기본적으로 최저 1,000달러 이상 20만 달러 이하로 정하고 있고, 위조가 의도적(willful)으로 이루어진 악의적인 침해⁶⁾인 경우에는 최고 200만 달러까지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

정한다.(15 U.S.C. §1117(c))⁷⁾ 즉, 미국 상표법상 상한선인 20만 달러뿐만 아니라, 하한선인 1,000달러를 정하고 있고, 게다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악의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200만 달러까지 그 상한선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의 입법례

저작권법은 상표법처럼 법정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액을 침해된 저작물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하한선을 정할 경우 개별 저작물로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침해된 저작물이 대량일 때에는 침해자가 감당하지 못할 금액의 손해액이 정해질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⁸⁾

그러나, 기본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두고 있으면서, 영리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5,000만 원으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어서⁹⁾,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별도의 규정으로서 높게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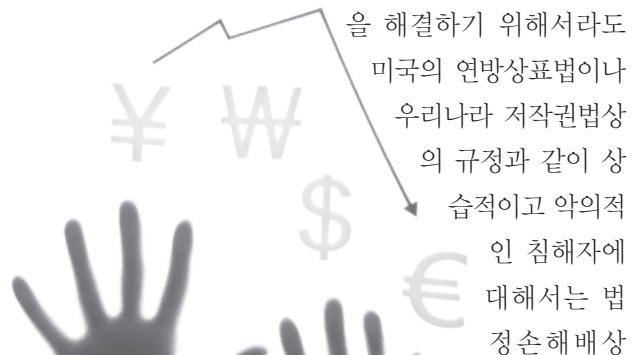
소결

하한선의 정함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한꺼번에 수만 건의 저작물이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될 수 있는 저작권법과는 달리, 상표에 있어서는 온라인상에서라도 한 개의 상표에 대해서 한 개 또는 몇 가지 안되는 특정 상품들에 관하여 위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따라서, 침해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저작물 단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상표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하한선을 정하지 않은 근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상표는 저명상표 등이 신용을 쌓아온 특정 상품

에 한하여 위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량의 상표 위조행위에 관한 문제가 동일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겠다.¹⁰⁾ 따라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하한선을 정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며, 하한선을 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명상표 등의 가치 등이 실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낮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도 저명상표의 경우에 상습적으로 저명상표들을 모방 및 위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덕업체나 상표브로커들이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거래계의 현실이므로, 이러한 거래질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4) Sara Lee Corp. v. Bags of New York, Inc., 36 F.Supp.2d 161 (S.D.N.Y. 1999).
 5) 최경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3집제3호, 중앙법학회, 2011.9, 223쪽 참조.
 6) 주로 위조대상상표가 유명상표이거나 법원의 금지명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이러한 의도적(willful)인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 Cornell University Lawschool website(<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5/1117>) 참조.
 8) 문화관광체육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2011.12, 43쪽.
 9)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10) 일반적으로 한 상표권자가 아닌 다수의 상표권자들의 저명상표들을 한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이 위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일대일로서의 동일한 당사자간에 다수의 상표권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보기 힘들 것이다.

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상의 내용과 같이 상표권자의 실질적인 보호라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른 경우에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표법상에서는 법정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적절한 하한선의 설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가중적인 배상액의 부가가 필요할 것이므로, 미국상표법 및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같은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상한선을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구변경을 규정상 명시하고 있는 것에 관한 문제

문제의 제기

현행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에서는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규정에 있어서의 특색은 바로 제2항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법규정 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에 있다.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취지에는 손해액을 언급할 뿐,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도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손해배상청구가 법정손해배상에 근거한 청구인지 실손해배상에 근거한 청구인지는 청구원인 중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청구 변경은 민사소송법상 청구 원인의 변경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법 제67조의2 제2항에서는 실손해배상청구를 법정손해배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론종결시점이전에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실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해당 규정상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만 언급되어 있는 문구는 외국의 입법례와 저작권법상의 입법례 등을 통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입법례

한편, 우리와 FTA의 체결국으로서 우리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준 미국의 연방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상표권자는 피고가 위조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실손해배상 대신에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의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15 U.S.C. §1117(c)¹¹⁾ 즉, 해당 법규정상으로는 실손해배상대신에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어느 일방으로의 청구 변경이 허용된다는 식으로 언급되고 규정은 없다.

저작권법상의 입법례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같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 손해액이나 실제 손해액에 같음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청구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다.

소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상표법상에서만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하여 청구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손해액에 관한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으로 법정손해배상청구에서 실제 손해액에 관한 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서 실제 손해액에 관한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실제 손해액에 관한 청구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¹²⁾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는 상표법 제67조의2 제2항에서의 청구변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만을 존치시켜도 민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변론주의의 원칙상 청구의 원인 변경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청구의 변경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족(蛇足)처럼 제2항의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마치 실제 손해액에 관한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로의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규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해당 법제도에 관한 당초의 해석과 입법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렇게 불필요한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족 같은 상표법 제67조의2 제2항에서의 청구 변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상표법상 입법례를 따르거나, 저작권법상의 입법례와 보조를 맞추는 법 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며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그 손해액의 산정 등의 곤란함을 보완하여 침해를 억제 및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보장함으로써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적 해결방식이 아닌 민사적 해결방식의 활용이 증대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의 입법례와 국내 저작권법의 입법례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와 같은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을 위한 법적정비를 특허청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2. 7 |



정 태 호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

11) the plaintiff may elect, at any time before final judgment is rendered by the trial court, to recover, instead of actual damages and profits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an award of statutory damages for any such use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or distribution of goods or services in the amount of -
 (1) not less than \$1,000 or more than \$200,000 per counterfeit mark per type of goods or services sold, offered for sale, or distributed, as the court considers just; or
 (2) if the court finds that the use of the counterfeit mark was willful, not more than \$2,000,000 per counterfeit mark per type of goods or services sold, offered for sale, or distributed, as the court considers just.
 12) 오승중, 「저작권법(제2판) 주석」, 박영사, 2012, 28쪽.



OLED 표장의 상표등록 가능성

【사례】

최근 국내의 A 전자회사에서는 “**OLED**”, “Flex OLED”, 및 “**OLED**_{오엘에디}”의 상표를 전자제품에 대하여 상표출원하였다. “OLED”는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약자로서 “OLED TV”는 OLED 방식, 즉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방식으로 화면을 구현하는 방식의 TV를 말한다.

이후 A 전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B 전자회사에서는 “**Samsung OLED TV**”를 전자제품에 대하여 출원하였다.

“OLED” 부분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상표법상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I. 식별력이란?

상표법은 제6조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는 상품의 출

처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어떤 표지가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표지를 통해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식별력이라고 하며 식별력은 어떤 표장이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식별력은 상표마다 구체적인 판단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심사 시에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심사의 신속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표법은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I.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들

1 보통명칭상표²⁾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를 보통명칭상표라 한다. 보통명칭(generic term)이란 “컴퓨터” “커피”와 같이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등을 말한다.³⁾

이러한 보통명칭은 식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물건의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보통명칭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처음부터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도 있지만 당초에는 상표였던 것이 그 상품이 너무나 유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소유자가 상표의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보통명칭화한 것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아스피린”이고, 그 외에도 “초코파이” 및 “호도과자” 등이 있다.

2 관용상표⁴⁾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관용표장상표라 한다. 관용표장이란 청구에 있어서 “정종”, 구강 청량제에 있어서 “인단”과 같이 특정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한다.

보통명칭상표와 차이점은 주체적 판단기준으로서, 보통명칭은 거래계나 일반 수요자들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대하여 관용표장은 동종업자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명칭을 말한다.

3 기술적 표장⁵⁾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표지를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한다.

기술적 표장에 속하는 것으로는 상표법상 열거된 것 이외에도 일등급 우유, 명품 의류, 노란색 우유 등과 같이 상품의 등급, 품위, 색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며 그밖에 슬로건이나 광고설명적 어구 등 성질 표시적인 표장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

1)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35면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5)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6)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41면

기술적 표장은 성격상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 거래상 누구나 사용해야 할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산지표시란 굴비에 대해 “영광”, 녹차에 대해 “보성”과 같이 상품이 그 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경우는 물론 일반의 수요자 거래자가 당해 상품이 그 지방에서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⁷⁾ 따라서 해당상품이 현실로 생산 판매되지 아니하고 일반인에게 그러한 인식도 주지 아니하는 지명은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산지표시인지의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품질표시란 런닝셔츠에 대해 “하이런닝”, 녹차에 대해 “생명물” 등과 같이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품질의 상태 또는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재료표시란 샴푸에 대해 “케라틴”과 같이 당해 원재료가 당해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당해 상품의 주원료 또는 주요부품은 물론 보조원료 또는 부품이라 하더라도 동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⁸⁾

효능표시란 샴푸에 대해 “No More Tears”와 같이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물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당해 상품의 성능은 물론 주관적인 안락감, 쾌감 등 만족감의 표시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표시된 성능의 유무를 불문한다.⁹⁾

용도표시란 축구화에 대해 “KICKERS”, 콜라에 대해 “DIET COLA”와 같이 당해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

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지정상품의 수요계층 또는 수요자, 편의품, 필수품 등도 포함된다.

수량표시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량의 단위, 기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형상표시라 함은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외형, 모양(무늬포함) 및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색채표시(립스틱에 대해 “RED”, 복사지에 대해 “WHITE”)도 형상표시에 해당한다.

가격표시라 함은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격과 가격표시로 인식되고 있는 단위 및 그 단위의 기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9900원”, “100\$”)를 의미한다.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의 표시라 함은 상품의 제조, 재배, 양식, 조립, 가공방법이나 push, pull, combination 등 사용방법을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기표시란 계절상품에 있어서 춘하추동의 표시, 부동액에 있어서 “FOUR SEASON” 등의 표시를 말한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¹⁰⁾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국가명,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뿐 만 아니라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변화가 등의 명칭 등과 이들의 약칭까지 포함한다.

다만, 그 용어 자체가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는 것이며, “동아”, “중동”과 같이 지정학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도라 함은 세계지도(그 일부를 포함) 또는 국내외 국가의 지도 등을 의미하며, 정확한

지도는 물론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5 흔히 있는 명칭¹⁾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포함한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인지 여부의 판단은 전화번호부 또는 인명록 등에 상당수가 있는지를 참고로 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때 거래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같은 성이나 명칭을 가진 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¹²⁾ 외국인의 성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흔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이 아닌 한 흔한 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간단하고 흔한 표장¹³⁾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십자가 모양 등과 도형이나,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외국문자로 구성된 표장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¹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구성자체로 특정인의 상품임을 식별시킬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설사 식별력이 인

정된다 할지라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예시적, 정형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표법 취지상 상표로서 보호할 수 없는 표장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Ⅲ.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

1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도안화

보통명칭, 기술적 표
장, 흔히 있는 명
칭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한 표
장에 한해서 등록
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7)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8)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45면
9)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다386 판결
10)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1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12) 심사기준 제8조 제3항 해석참고자료
1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1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표시하였다 함은 상표의 외관은 물론 칭호 또는 관념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그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직감할 수 있는 표시를 말하며, 어의 상의 의미로서의 보통명칭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TRUCK LITE”의 경우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¹⁵⁾

또한, 기술적 문자 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 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문자 인식력을 압도한다는 뜻은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그 스펠링 및 의미를 직관적으로 깨닫지 못할 정도를 말한다.



2 식별력이 있는 부분과 결합

보통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표라도 그것이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후라보노킴”의 경우에는 “초코파이” 및 “후라보노킴”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등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나, “오리온” “롯데” 등이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상표법은 형식적으로는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구체적인 사용을 통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는 자타 상품식별기능이 있고, 독점적응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¹⁶⁾

상표의 구성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다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의 상품표지로서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거래상의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면 그 표지는 앞에서 본 객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와 적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장은 이미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승인된 셈이어서 일반 공중의 자유사용을 위해 방임하여 둘 공익상의 필요성도 상실된 셈이므로 상표로서의 실질적인 보호요건을 사후적으로 획득한 것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⁷⁾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함은 당해 상품의 유통망, 즉 관계 거래권에 속하는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의 대다수가 당해 표장을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승인하고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특정인이란 구체적인 출처가 아니라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인 출처로서 즉

하다.

다만,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상표심사기준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와 일정지역에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상표는 일단 등록이 되면 그 효력이 우리나라 전역에 미치므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국적 범위에 걸쳐 상표로서 인식될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결론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표지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 출원 시에 미리 구체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등록을 받을 당시에는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식별력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다만, 식별력의 유무와 정도는 상표의 객관적 구성뿐만 아니라 당해 상표의 사용실적, 거래실정, 당해 상품과 서비스와의 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동적, 상대적 개념이며 추상적, 객관적, 절대적으로 고정된 관념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어진 사례에서 A 전자회사의 상표 등록 여부 및 B 전자회사의 상표 사용 여부는 해당 전자제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즉, “OLED”의 부분은 해당 전자제품이 디스플레이를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전자제품의 경우에, 일반수요자들이 “OLED”의 의미와 해당 전자제품의 그러한 성질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보통명칭 내지 기술적표장에 해당하게 되어 그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B 전자회사에서 “AMOLED”의 상표를 전자제품에 대해 등록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요국에서는 거절된 바 있다. 2012. 7 |

1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
 16) 상표법 제6조 제2항
 17)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53면



손 지원
 특허법인 다해 대표변리사



특허분쟁에서의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전략에 대한 고찰

특허무효심판 절차 내에서의 특허권자의 방어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답변서의 제출과 특허의 정정청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특허의 정정청구라 함은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소정의 기간 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특허권자에게 답변서 등의 제출기회와 함께 정정청구를 통하여 무효심

판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양자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한 절차이다.

한편,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청구가 있기 전이라도, 독립적 절차인 정정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향후 청구될 무효심판 청구에 대비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이 이미 청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 계

속중인 경우에는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의 정정의 실익

특허법상 정정 요건과 정정의 실익

특허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3의2①③)

i)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ii)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정정할 것, iii)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 iv)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잘못된 기재의 정정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상기 i)의 요건에서와 같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실무상 대부분의 무효심판 청구가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 청구임을 감안하면 특허권자는 정정청구를 통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추가의 기술적 특징을 특허청구범위에 부가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유효성(진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 iii)의 요건에서와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정에 의해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는 아니 되는 것이

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특허청구범위의 변경이란 정정 전의 발명에 구성요소(기술적 사항)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마치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변경되어 다른 발명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99허1171).”고 판시하고 있다.

즉, 특허권자는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을 부가하는 정정을 통해 진보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와 같이 부가된 기술적 특징에 의해 특허청구범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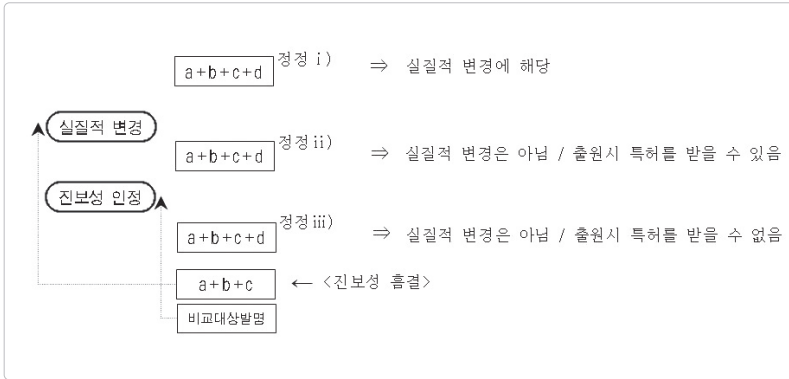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정정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확보되는 것과 정정에 의해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정정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면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에서의 진보성 흠결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는 정정청구는 그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정에 의해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구비하게 되는 것과 해당 정정에 의해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별개의 기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정정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특허발명의 출원전의 공지 기술과 대비하는 것인 반면, 정정된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정정전의 특허발명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정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구비됨으로써 정정전의 특허발명에 비해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정정에 의해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구비하게 되었음에도 정정전 특허발명에 비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즉, 상기의 그림 1에서의 case ii)에서와 같이 정정에 의해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실질적 변경에도 해당되지 않는 영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역에의 진입을 통해 특허권자는 특허의 정정을 통해 특허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의 정정절차에서 자신이 시도하는 정정이 상기의 그림 1에서의 case ii)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정 청구의 민형사 침해소송에서의 영향의 검토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침해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해당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정청구를 하는 것은 특허 분쟁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민형사 법원에서 이와 같은 특허권자의 정정청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느 정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소송이 계속중인 특허권에 대한 정정청구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해당 정정이 인정될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따

라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침해소송의 심리를 진행하기 곤란해지는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특허권자의 정정청구는 특허권자의 공격 무기인 특허권의 취약성을 특허권자가 자인한 것으로 법원에 비취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정정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침해자의 제품이 정정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할 것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내릴 것을 기대하기도 힘든 것이다.

이러함 점들을 고려하여,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특허권자가 정정을 청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불가피하여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정 청구를 하게 된 이유, 정정에 의해서도 여전히 침해대상 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효심판의 단계별 정정의 전략

무효심판의 청구전

무효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자신의 특허를 무효

화시킬 수 있는 선행 기술문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특허의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정정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권의 안정성을 사전에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효심판이 청구된 이후에는 독립된 절차인 정정 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의 부수적 절차인 정정 청구만이 허용되는데 정정 심판은 결정계 심판으로서 심판부와 청구인의 사이에서만 심리가 진행되지만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의 정정 청구는 양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통해 심리가 진행되는 관계로 정정 청구의 부적법함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 등 그 심리의 과정에 정정 심판보다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무효심판이 특허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무효심판이 특허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면 특허의 정정을 하려는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무효심판 절차 내의 부수적 절차로서의 정정 청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답변서 제출 기간, 심판관의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의 심판장에 의한 지정기간 내에만 정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복수의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정정청구는 취하되므로 새로운 정정 청구에서는 이전의 정정청구에서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만약,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가 불인정되고 그에 따라 무효심결이 내려진 경우라면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여부에 따라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중

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독립적 절차로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신속하게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정정 또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된 새로운 정정을 정정 심판을 통해 인정받기를 시도해야 하며, 심결취소소송의 심결 전에 정정이 인정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정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가 진행되게 되는 실익이 있다.

즉, 특허발명의 유효성을 확보하게 하는 정정심결이 내려지고, 이와 같은 정정이 반영되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가 진행된다면, 심결취소소송은 취소판결로 귀결될 것이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특허 심판원으로 환송되어 재심리 된다.

이 경우에 환송된 무효심판 절차에서 새로운 무효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환송 판결의 기속력의 법리에 따라 무효심판에서는 기각 심결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심결취소소송의 기각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정정심판의 인용심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판결 전에 정정심판의 인용심결이 있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상고 이유서(또는 보충서)의 제출을 통해 해당 정정을 고려하지 않은 특허법원의 판결은 법령위반의 파기환송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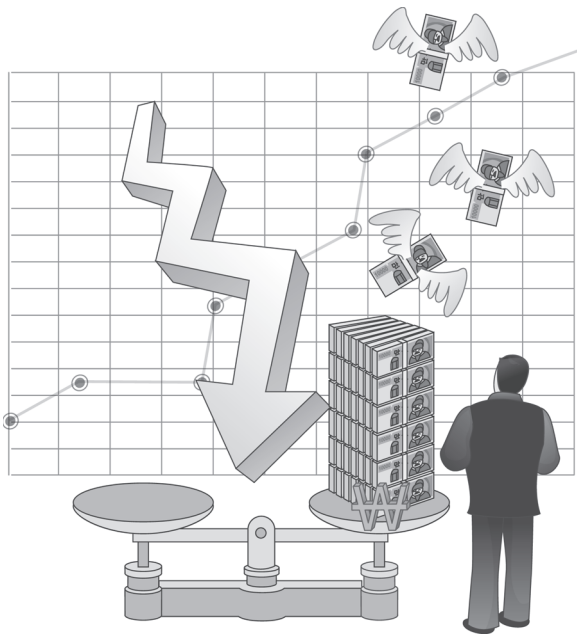
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독립적 절차로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상고심 판결이 있기 전에 신속하게 정정심판의 청구 및 정정심결을 유도해야 한다.

이후 상고심 판결 전에 정정심결이 있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상고 이유서(또는 보충서)의 제출을 통해 해당

정정을 고려하지 않은 특허법원의 판결은 법령위반의 파기환송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의 판결이 파기되어 특허법원으로 환송되고, 특허권의 유효성을 확보하게 하는 정정이 고려된 상태에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가 진행된다면, 특허법원에서는 취소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특허 심판원으로 환송되어 재심리가 이루어진다.

이때 환송된 무효심판 절차에서 새로운 무효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환송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따라 무효심판에서는 기각 심결이 내려지게 된다.



특허의 정정에 따른 특허권자의 책임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특허의 정정은 정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후, 그 특허권 행사의 기초가 된 특허청구범위를

를 감축하는 정정이 인정되고,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초하여 판단한 결과 침해대상 제품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타인은 처음부터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타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재심 사유의 발생

아울러,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유죄판결 또는 인용판결이 확정된 후, 전에 한 판결의 기초가 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이 인정된 때에는 전에 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민사소송법 451①, 형사소송법 420⑥) 2012. 7 |



김 현 호
특허법인 맥 대표변리사



특허 Q&A

Q. PCT-SAFE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PCT-SAFE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WIPO에서 개발한 국제출원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PCT-SAFE의 Full Electronic-online방식

- PCT-SAFE의 Full Electronic - online 방법으로 Request,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작성 및 도면 첨부 (PCT K-Editor)
 - Request 작성 (PCT-SAFE)
 - 작성된 Request와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 결합 (PCT-SAFE)
 - 전자서명 (PCT 인증서 또는 WIPO 인증서)
 - 제출매체를 온라인(online)으로 선택
 - PCT-SAFE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PCT국제출원 → 온라인제출 코너 접속 후 제출도 가능

■ PCT-SAFE의 EASY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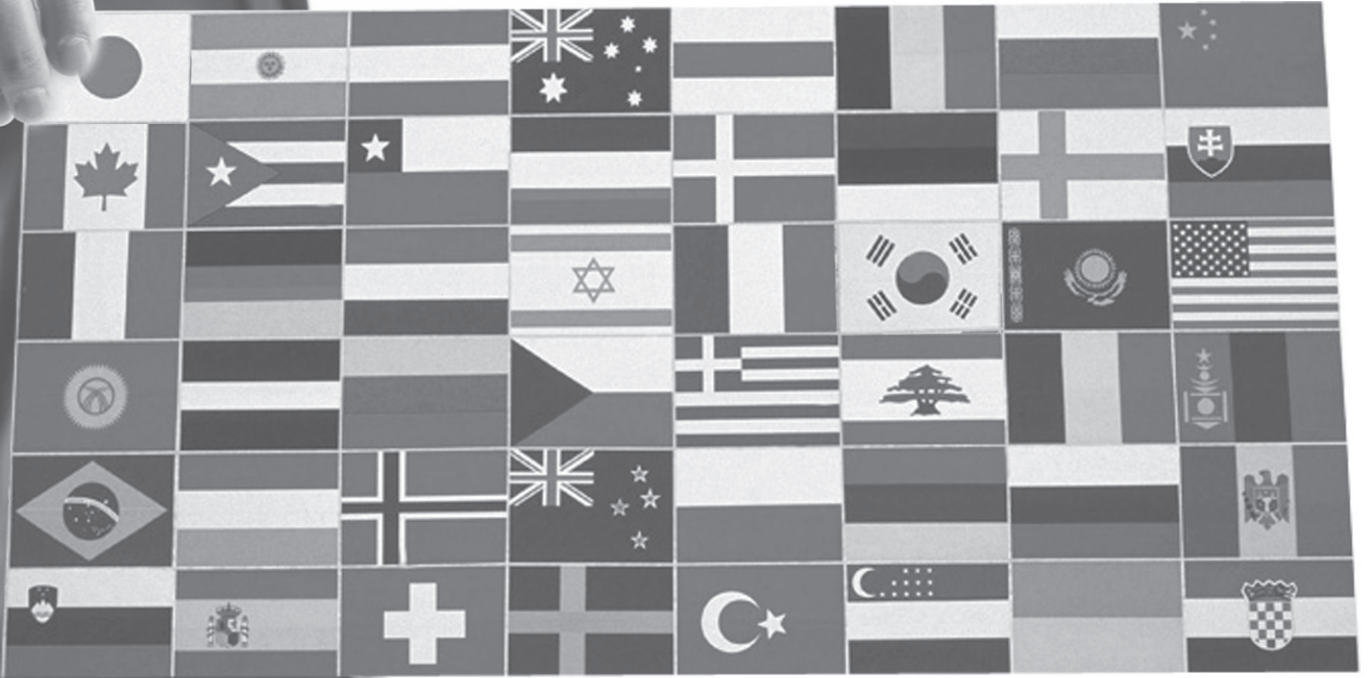
- : PCT-SAFE의 EASY MODE에서 Request와 요약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FD에 기록하고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FD와 함께 서면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Request와 요약서 작성 (PCT-SAFE)
 - 서면형태의 국제출원서류(3부)와 FD를 함께 제출

■ PCT-SAFE 소프트웨어 배부처

- <http://wipo.int>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PCT국제출원 → 문서작성SW설치

■ 수수료 감면

- PCT-SAFE Easy Mode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100CHF이 감면됩니다.
- PCT-SAFE Fully Electronic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300CHF이 감면됩니다.



PCT 국제특허의 개별국 진입 국가 선정

지난 3월 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중국의 ZTE Corporation이 2011년 PCT 특허 신청 부문에서 총 2,826건을 신청해 세계 1위에 올랐다는 글로벌 연구결과를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독립(속주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자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방법은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전통적인 출원방법이란,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협약에 따라 최초출원(자국출원)한 후 12개월 이내에 제3국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최초출원한 후 10개 국에 해외출원을 하려 할 경우, 각 국의 특허법에 맞게 10종류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PCT 국제출원방법의 장점은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개별국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작성할 필요 없이, 단 하나의 PCT 출원서류 작성만으로 전세계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하다.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도 있다.

단,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인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즉, PCT 국제출원을 한 후 특허권을 획득하고 싶은 국가에 그 개별국의 언어로 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PCT 출원을 한 후 보통 30개월 내에 개별국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느 국가로 진입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물론, PCT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진입을 하면 되겠지만, 실제 특허를 출원한 국가라 하더라도 그 특허기술을 이용하지 않거나, 특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가 없어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국가에까지 진입을 하는 것은 오히려 특허 출원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PCT 특허를 개별국으로 진입할 때, 어느 국가에 진입을 해야 특허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어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여 PCT 출원을 하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 하는 기업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가 어느 국가에 출원되고 있는지, 어느 국가에 출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가 주로 어떤 국가에 출원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당 기술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본인 회사의 특허를 전략적으로 어느 국가에 출원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영업비밀일 수도 있고, 그 기업만의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련 사람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지 않고도 특허출원 국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관련 기술의 주요 업체 PCT 특허를 대상으로 Family 특허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특허 공개제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PCT 출원을 하는 경우는 기술성이 뛰어나서 주요 특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 경우는 특허를 보정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PCT 출원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이슈 되고 있는 표준특허가 그러하다. 표준특허는 매우 중요한 특허이기도 하지만, 표준화 진행 방향에 따라 청구범위 보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기술 분야 중, MPEG 표준화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기술에 대한 주요특허의 PCT 특허 Family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PCT 출원 이후 국내단계로 진입할 때, 개별국 진입 대상 국가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PCT 특허의 Family 현황 분석

이번 분석에서는 HEVC 기술 중, Intra Prediction 기술과 Motion Vector Coding 기술 관련 특허를 추출하고, 그 중 PCT 특허를 대상으로 Family 특허 현황을

조사하였다.

HEVC 기술에 관련된 많은 업체들 중, 삼성전자(한국), 엘지전자(한국), 톰슨라이센싱(프랑스), 퀄컴(미국), 소니(일본), 화웨이(중국)의 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특허는 총 83건이며, 분석대상 특허에 대해 Espacenet(<http://worldwide.espacenet.com>)에서 각각 특허번호를 입력하여 Family 특허 현황을 조사하였다.

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삼성전자	25	엘지전자	7
톰슨라이센싱	24	퀄컴	7
소니	12	화웨이	8
		합계	83

[표 1] 조사대상 특허 (총 83건)

코드	WO	KR	US	JP	EP	CN	TW	MX
국가	국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대만	멕시코
코드	CA	AU	RU	HK	BR	AP	AT	ZA
국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홍콩	브라질	아프리카 지역 산업 자산 조직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표 2] 국가 코드



(1) 삼성전자

출원번호 (PCT)	WO	KR	US	JP	EP	CN	TW	MX	CA	AU	RU	HK	BR	AP	AT	ZA
KR2004003476	o	o	o													
KR2005001683	o	o	o	o	o	o	o	o			o	o	o	o		
KR2005002008	o					o										
KR2005003916	o				o											
KR2005004689	o				o											
KR2005003225	o															
PCT/KR2006002881	o				o											
PCT/KR2006002869	o															
KR2006000207	o															
PCT/KR2007001368	o	o	o	o	o	o										
PCT/KR2007001548	o	o	o	o	o	o		o								
PCT/KR2007005566	o		o		o	o										
PCT/KR2007005581	o		o			o										
PCT/KR2007006913	o	o	o	o	o	o										
PCT/KR2007005585	o		o		o	o										
PCT/KR2008000018	o	o	o	o	o	o										
PCT/KR2008000020	o	o	o		o	o										
PCT/KR2008000115	o	o	o	o	o	o										
PCT/KR2008000231	o	o	o		o	o										
PCT/KR2008000545	o	o	o													
PCT/KR2008002276	o	o	o													
PCT/KR2009001086	o	o	o	o	o	o										
PCT/KR2009/005436	o	o	o					o	o	o						
PCT/KR2010/005437	o	o	o					o	o	o						
PCT/KR2009/005365	o	o	o		o		o	o	o	o						

(2) 엘지전자

출원번호 (PCT)	WO	KR	US	JP	EP	CN	TW	MX	CA	AU	RU	HK	BR	AP	AT	ZA
PCT/KR2008006113	o	o	o	o	o	o										
PCT/KR2009001166	o		o	o	o	o	o									
PCT/KR2009002403	o	o	o		o											
PCT/KR2009/005699	o		o													
PCT/KR2009/005700	o		o													
PCT/KR2010/000047	o	o	o		o											
PCT/KR2010/003006	o		o													

(3) 톰슨라이센싱

출원번호 (PCT)	WO	KR	US	JP	EP	CN	TW	MX	CA	AU	RU	HK	BR	AP	AT	ZA
US2003021494	o	o		o	o	o		o		o			o			
US2003021515	o	o		o	o	o		o		o			o			
US04027397	o	o		o	o	o		o					o			
US04027434	o	o		o	o	o		o					o			
US2005037469	o		o	o	o	o							o			
EP2005002072	o	o	o	o	o	o				o			o		o	
US2006000250	o		o													
PCT/US2006019212	o	o	o	o	o	o		o		o	o					o
US2006009915	o	o	o	o	o	o		o					o			
PCT/US2007002383	o	o	o	o	o	o										
PCT/EP2007051480	o		o	o	o	o										
PCT/US2007014752	o	o	o	o	o	o	o									
PCT/EP2007063574	o		o		o											
PCT/US2009000110	o	o	o	o	o	o										
PCT/US2009002236	o	o		o	o	o										
PCT/EP2010/050131	o				o											
PCT/EP2010/052696	o						o									
PCT/EP2010/058478	o				o	o										
PCT/US2010/001862	o		o		o											
PCT/US2010/002203	o															
PCT/US2010/002498	o															
PCT/US2010/002657	o															
PCT/US2010/002690	o															
PCT/US2010/002670	o															

(4) 쉐일

출원번호 (PCT)	WO	KR	US	JP	EP	CN	TW	MX	CA	AU	RU	HK	BR	AP	AT	ZA
US2005025155	o	o		o	o	o				o						
US2006001421	o	o	o	o	o	o									o	
PCT/US2007088761	o		o	o	o		o									
PCT/US2008060537	o	o	o	o	o	o	o									
PCT/US2008060535	o	o	o	o	o	o	o									
PCT/US2008060539	o	o	o	o	o	o	o									
PCT/US2010/040481	o		o				o									

(5) 소니

출원번호 (PCT)	WO	KR	US	JP	EP	CN	TW	MX	CA	AU	RU	HK	BR	AP	AT	ZA
JP0204530	o		o	o	o	o										
JP04010317	o	o	o	o	o	o		o			o		o			
JP2005016571	o	o		o	o	o										
PCT/US2007008254	o		o	o	o	o										
PCT/JP2007063950	o	o	o	o	o	o	o									
PCT/JP2009062027	o		o	o		o										
PCT/JP2009/067224	o		o			o										
PCT/JP2010/052018	o	o	o		o	o	o									
PCT/JP2010/057126	o		o	o		o	o									
PCT/JP2010/057127	o		o	o	o	o	o	o	o	o	o					
PCT/JP2010/060605	o		o	o	o		o	o	o	o						
PCT/JP2010/063156	o			o												

(6) 화웨이

출원번호 (PCT)	WO	KR	US	JP	EP	CN	TW	MX	CA	AU	RU	HK	BR	AP	AT	ZA
CN2005000949	o					o										
PCT/CN2008070092	o	o	o	o	o	o										
PCT/CN2008072688	o		o		o	o										
PCT/CN2009070057	o					o										
PCT/CN2009070287	o					o										
PCT/CN2009/074032	o					o										
PCT/CN2010/076464	o					o										
PCT/CN2010/078564	o					o										

분석 결과

HEVC 기술에 대한 주요 출원인들의 특허를 분석해 본 결과, PCT 출원된 특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개별국 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위의 출원국들에 비디오 코딩 기술을 실시하는 주요 업체가 있거나, 비디오 코딩 기술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출원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외에 대만,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개별국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국가들 역시 기술적이나 시장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HEVC 기술 관련된 표준특허(주요특허)의 경우 상기 개별국가로의 진입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디오 코딩 기술에 대한 특허풀인 MPEG-LA의 로열티 배분 기준을 보면 각 개별국에 진입되어 있는 특허수로 로열티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데, 즉, 한국에서 거두어진 로열티는 한국 특허권 수에 따라 배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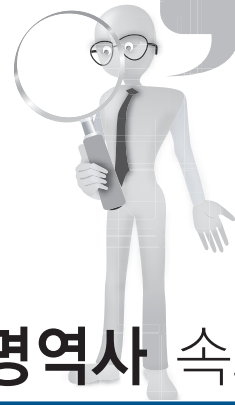
예를 들어 한국에서 A 회사가 특허풀이 운영 중인 표준기술에 사용하는 제품을 100개 생산하여 미국에 100개의 제품을 수출하여 판매하였다고 가정하고, 제품 1개당 1달러의 로열티를 MPEG LA 같은 Agent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A 회사는 한국에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반면에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는 B 회사가 한국과 미국에 각각 표준특허 1건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 회사는 총 100달러의 로열티를 Agent에게 지불하고, Agent는 이를 표준특허 보유건수에 따라 분배한다. 표준기술의 활용은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달러 중 50달러는 한국에 배분하고, 50달러는 미국에 배분한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표준특허는 B 회사만 있기 때문에 미국에 배당된 로열티는 모두 B 회사에 배분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1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25달러의 로열티를 배분받는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A 회사는 25달러, B 회사는 75달러의 로열티를 배분받게 된다. 이러한 예는 모든 특허풀에서 로열티분배방식으로 정형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분배논리로 로열티의 분배

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특허의 경우 국가별 출원전략은 해당 표준기술이 활용되는 국가, 즉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지, 관련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지, 관련제품이 판매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중 어느 하나의 경우이라도 포함된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특허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므로 출원국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타 기업의 특허가 진입되지 않고 있으나 로열티 발생이 예상되는 신흥공업국(개발도상국)을 발굴하여, 개별국 진입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12. 7 |**





이다야의 오돌토돌 고무표면

생활 속 불편함을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해결

발명역사 속으로

세심한 관찰은 발명을 낳는다. '오돌토돌한 고무표면'이란 아이디어 하나로 갑부가 된 일본인 이다야 이와오가 좋은 예다. 이다야는 작은 철공소를 경영하는 사람이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했으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접시를 떨어뜨려 깨고 말았다.

'이걸 어쩌나?'

아내는 무척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아내를 안심시킨 이다야는 고무장갑의 표면이 매끄러워 접시가 미끄러졌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이다야는 시장에 나가 표면이 오돌토돌한 고무장갑을 찾아 보았다. 하지만 표면이 오돌토돌한 고무장갑을 찾을 수 없었고, 아직 발명되지도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다야는 즉시 특허출원을 마치고 소량이기에는 하지만 생산에 착수했다. 이다야가 만든 고무장갑은 생산되기가 무섭게 팔려 나갔다. 밀린 주문량만도 몇 년은 더 생산해야 할 정도였다.

이다야가 크게 성공하자 오돌토돌한 장갑의 새로운 용도를 알려 주려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이다야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로열티(특허권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사례들이다.

첫 번째는 어느 병원의 간호사!

"환자들이 얼음 주머니를 이마에 얹을 때 미끈거린다고 기분 나빠하는데 이 장갑처럼 오돌토돌한 얼음 주머니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다야는 이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즉시 생산에 착수하였으며, 역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의견을 낸 간호사는 자기 월급의 5배가 넘는 로열티를 지급 받았다.

두 번째는 이 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병원 의사!

"오돌토돌한 고무장갑의 원리로 수술 장갑을 만들고, 오돌토돌한

강도를 낮춰 촉감이 좋은 콘돔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다야는 이 아이디어도 적극 반영하여 생산에 들어가 또다시 대성공을 거두었다. 물론 의사에게도 로열티를 지급했다.

세 번째는 신문팔이 소년!

"고무골무를 오돌토돌하게 만들면 신문을 세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 역시 즉각 반영되어 크게 성공함으로써, 신문팔이 소년도 많은 로열티를 받았다. 이 골무는 지금까지도 서류를 취급하는 관공서와 회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오디〉

통풍을 치료하는 약초와 특허

특허공개 제10-2011-51545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디 발효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통풍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본 발명은 오디 발효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통풍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오디 발효 추출물은 혈중 요산 저하 효과가 우수하므로, 통풍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오디는 뽕나무 또는 산뽕나무의 열매로 상실(桑實)·오들개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녹색이다. 익어가면서 붉어지다가 검은 빛을 띤 자주

색으로 변하며, 잘 익은 오디는 달콤한 즙이 풍부하며, 포도당과 과당 등을 비롯하여 비타민, 칼슘, 철 등이 함유되어 있다. 강장제로 알려져 있으며 내장, 특히 간장과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한다.

특허공개 제10-2010-122309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뽕잎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통풍 또는 고요산혈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본 발명은 뽕잎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통풍 또는 고요산혈증 예방 및 치료용 조

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동물실험으로 혈중요산의 저하 효과를 나타내는 뽕잎 추출물을 이용한 통풍 또는 고요산혈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뽕잎 추출물은 통풍 또는 고요산혈증 예방 및 치료용 약제, 기능성 식품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꾸지뽕나무〉



꾸지뽕나무는 중부 이남의 양지쪽 산기슭이나 바닷가에서 많이 자란다. 가지에는 큰 가시가 있고, 열매는 육질이며 9월에 붉은 색으로 익는다. 익은 뽕잎 대용으로 쓰지만 잎이 두꺼워서 누에가 잘 먹지 않는다. 잘 익은 열매는 식용할 수 있으며 잼을 만들거나 술을 담그고, 나무 껍질과 뿌리는 약용하며, 각종 암에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거나 주로 부인병 계통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허등록 제10-49247호, 윤병원, “통풍 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

본 발명은 통풍의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한 새로운 치료제 및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것으로, 정제 어유, 녹차 추출물, 서양산사자 추출물, 다시마 추출물, 산조인 추출물 및 은행잎 추출물을 필수 구성 성분으로 하는 본 발명의 통풍 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은, 요산의 생성을 억

제하고 배설을 원활히 함으로서 통풍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산사〉



특허등록 제10-662206호, 주식회사 장생도라지, “장생홍도라지 열수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통풍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본 발명은 장생홍도라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

〈도라지〉



如雲

하는 통풍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로서, 장생홍도라지 추출물은 열수추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풍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조성물을 포함하는 약학제제 및 기능성 음료를 포함한다. 장생홍도라지 추출물은 크산틴 산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하여 혈중 요산의 농도를 낮추고, 젤라티나아제 B(MMP-9)의 활성을 저해하는바,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은 통풍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약품 또는 기능성 음료와 같은 기능성 식품소재로서 유용하다.

〈갯방풍〉



갯방풍은 우리나라 해변의 모래땅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의 모래땅으로 뿌리는 황색으로 굽게 땅속에 수직으로 뻗어 있다. 초여름에 피는 꽃은 흰색이고 뿌리는 약용으로, 잎 자르는 식용으로 쓰인다.

특허공개 제10-2010-138576호, 한국한의학연구원, “강활 및 방풍의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본 발명은 강활(*Notopterygium incisum*, N. incisum) 및 방풍 (*Saposhnikovia divaricata*, S. divari-

cata)의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상기 강활 및 방풍의 적정비율의 혼합 추출물은 각 약재 단독에 비하여, 염증 유발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는 염증 관련 인자인 인터루킨-1β (interleukin-1β, IL-1β), 종양괴사인자-α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및 일산화질소 (nitrogen oxide, NO)의 생성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현저한 부종억제 효과를 가지며, 세포독성이 없는 안전한 물질이므로,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허등록 제10-527105호, 학교법인 인제학원, “부추 추출물을 함유하는 통풍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본 발명은 통풍을 유발하는 크산틴 옥시다제의 활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부추 추출물을 함유한 통풍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부추를 약 10배 분량의 물, 에탄올, 메탄올과 같은 저급알콜 또는 이들의 혼합용매로 추출해 조추출물을 수득한 후, 그 조추출물의 핵산, 디클로로메탄, 에틸 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분획물의 크산틴옥시다제 저해활

〈참산부추〉



성을 측정한 결과, 탁월한 효소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므로 부추추출물은 통풍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허공개 제10-2010-138019호, 주식회사 금향바이오, “블루베리 추출물의 고요산혈증 예방 및 치료 용도”

본 발명은 고요산혈증에 대한 블루베리 추출물의 예방 및 치료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블루베리 추출물이 혈중 요산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블루베리 추출물을 고요산혈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학제제나 각종 기능성 건강 식품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고요산혈증은 통풍의 원인이 되므로 블루베리 추출물은 통풍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공개 제10-2004-80640호, 최종 거절, 주식회사 한국토종약초연구소, “항통풍활성을 갖는 개다래 추출물을 함유하는 약학조성물”

본 발명은 항통풍활성을 갖는 개다래(Actinidia polygama AP)의 추출물을 함유하는 약학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개다래 추출물이 고요산혈증으로 인한 통풍질환에 대해 요산함량강화 작용효과를 가짐으로써 통풍의 예방 및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깊은 산속 나무 밑이나 계곡에서 자란다. 꽃이 필 무렵, 잎의 위쪽이 하얗게 변해서 곤충을 유인한다.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헛바닥을 쓰는 듯한 매운 맛이 난다. 목천료자는 열매에 벌레가 기생하여 울퉁불퉁하게 생긴 벌레집, 즉 충영을 따서 말린 것인데 중풍, 안면신경마

〈개다래〉



비, 산통, 요통 등에 쓰며, 통풍에 특효약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 유미희 등, 한국식품과학회지 (2010년 8월 31일), “개다래 초임계 박추출물이 염증 및 동맥경화에 미치는 영향”

개다래(Actinidia polygama Max.)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뇌졸중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최근 소염, 진통, 통풍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특유의 강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어 기능성 식품이나 치료용 약물을 개발하고자 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개다래를 초임계 추출하여 향과 맛을 개선하고,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추출 후 남은 부산물을 이용하여 (박)추출물을 제조하고 항염증 및 항동맥경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개다래 주정 추출물 및 초임계 박 추출물의 NO 소거활성을 비교한 결과, 개다래박 11 추출물 10, 100ug/ml의 농도에서 36.63, 79.58%의 NO 소거활성을 보여 주정 추출물(4.61, 19.00%)에 비해 훨씬 높은 NO 소거활성을 보였다. 또한 RAW 264.7 세포주에 개다래 초임계 박 11 추출물을 처리하고,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한 후 염증인자인 PGE2의 생성, 그리고

proinflammatory cytokines인 TNF- α 의 생성량을 측정
한 결과, 개다래 박 11 추출물은 LPS로 유도된 염증
인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박 11 추출물의 MMP-9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zymography를 실시한 결과, 추출물 50,
100ug/ml의 농도에서 MMP-9의 활성이 효과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 MMP-9의 단백질 발현도 억
제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개다래 박 11 추출물
은 LPS로 유도된 염증 인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
으며, TNF- α 에 의해 증가된 MMP-9의 활성을 억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맥경화를 비롯한 고혈압, 암, 당
뇨, 관절염 등의 만성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
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다래〉



함양근, 특허등록 제10-2010-0035081호, “여
주 추출물을 포함하는 통풍 치료용 조성물 및 통풍에서
의 염증 예방용 조성물”은 여주 추출물을 포함하는 통
풍 치료용 조성물 및 통풍에서의 염증 예방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여주 추출물을 포함하는 통풍 치
료용 조성물은 혈액 중에서 통풍의 지표인 요산의 농도
를 효과적으로 낮추어 통풍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본 발명의 여주 추출물을 포함하는 통풍에서의 염
증 예방용 조성물은 염증유발효소 iNOS(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와 COX-2(cyclooxygenase-
2)의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인하여, 통풍에서의 염증 예방
의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여주 추출물을 포함하는 통
풍 치료용 조성물 및 통풍에서의 염증 예방용 조성물은
건조된 여주 열매를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농
축물로서, 인체에 투여 가능한 형태로 추출한 것을 특
징으로 한다는 내용 등의 연구결과가 있었다.

〈여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계내과학교실, 이주호 등, 대
한동의생리학회지(2006년 4월 25일), “금앵근(金櫻
根)이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白鼠)의 통
풍(痛風)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은 금앵근(金櫻根)이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白鼠)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백서에 금앵근 단미를 투여하여 MSU로 통풍을 유발시
킨 후 통풍 관절의 부종, 혈액학적 변화 및 요산합성의
중요 효소인 xanthine oxidase activity의 억제능을 측
정하였으며 그 결과 금앵근 추출물이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었으며, xanthine oxidase activity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고 통풍성 관절염의 부종을 일정하게 감

소시켰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금앵근 추출물은 MSU의 투여로 유발된 혈청 AST, ALT, uric acid의 상승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고 혈청 BUN, creatinine의 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시켰으며, 혈중 WBC, ESR의 증가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금앵근의 통풍 치료 약물로서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목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계내과학 교실, 조충식 등, 대한한방내과학회(2005년 6월 30일), “목면화가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은 목면화가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MSU를 투여하여 통풍을 유발시킨 백서에 목면화(木棉花) 단미를 투여한 후 통풍 관절의 부종변화, 혈액학적 변화 및 요산합성의 중요 효소인 xanthine oxidase의 활성을 측정해 본 결과 xanthine oxidase, 활성도 및 관절의 부종, 혈청 AST, 혈청 BUN, creatinine치와

혈중 WBC, ESR 모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어 목면화가 통풍 치료 약물로서 임상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청미래덩굴, 토복령〉



다음 호에 계속

2012. 7 |



조식제 서기관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

여기서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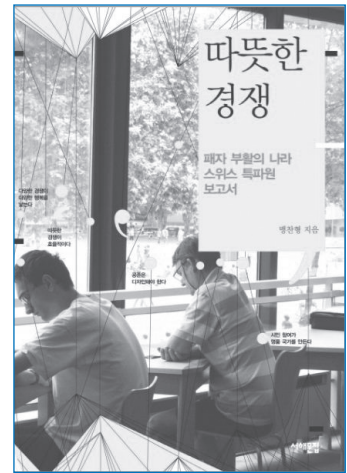


책과의 만남

따뜻한 경쟁

패자 부활의 나라 스위스 특파원 보고서 「따뜻한 경쟁」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유럽본부 주재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 맹찬형이 스위스에서 한국을 진단하고 한국 현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21세기 '명품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의식, 정치인과 공무원의 공직 담당 자세, 경쟁과 공존이 융합되는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였다.



저 자 맹찬형
출판사 서해문집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_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발명만화 _ 물레발명이야기 - 위키토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건강하게 삽시다 _ 무더운 여름, 현명하게 이겨내기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Apple社の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가처분신청 거절

지난 6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가처분신청 대상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를 포함시켜 달라는 Apple社の 요청을 거절했다.

Apple社は 자사가 요청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첫 번째 심리를 개시하기 이틀 전인 지난 6월 5일에 가처분신청 대상을 확대시켜 「갤럭시 S3」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Apple社の 요청에 대해 법원은 기존의 가처분신청 대상을 확대시켜 무리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Apple社가 별도의 심리를 요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pple社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3」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심리에 이를 추가시키지 말고 새로운 심리 일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justia.com>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2011년 기업 특허등록 순위 발표

지난 6월 6일,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2011년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허여한 특허들을 조사해 각 기업별 특허등록 순위를 정리한 「Top 300 Organizations Granted U.S. Patents in 2011」을 발표했다.

IPO에 따르면, USPTO가 허여한 특허 개수는 2011년에 총 244,430건으로서 2010년의 233,127건에 비해 약 4.8% 증가하였으며, 특허등록 상위기업들의 평균 특허등록 건수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 IPO는 1984년 이래로 매년 기업들의 특허등록 순위를 발표해 왔으며, 기업의 특허등록 건수가 반드시 해당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효율성, 수익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함

IPO가 발표한 특허등록 상위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순위	기업명	2011년 특허등록 개수	2010년 대비 변동률
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IBM)	6,148	4.8 %
2	Samsung Electronics Co., Ltd.	4,868	7.7 %
3	Canon K.K.	2,922	10.0 %
4	Hitachi, Ltd.	2,857	0.2 %
5	Panasonic Corp.	2,689	6.0 %
6	Toshiba Corp.	2,666	20.5 %
7	Microsoft Corp.	2,368	-24.1 %
8	Sony Corp.	2,265	6.3 %
9	Fujitsu Ltd.	1,762	7.0 %
10	Siemens Corp.	1,698	-2.6 %
11	General Electric Co.	1,697	11.9 %
12	Seiko Epson Corp.	1,525	6.1 %
13	LG Electronics Inc.	1,404	-5.6 %

IBM社は 전년 대비 4.8% 증가한 6,148건의 특허를 등록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특허등록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삼성전자도 전년 대비 7.7% 증가한 4,868건의 특허를 등록하여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2010년에 3위를 차지했던 Microsoft社は 전년 대비 24.1% 감소한 2,368건의 특허를 등록하여 순위가 7위로 떨어졌고, LG전자는 특허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14.8% 감소해 1,404건으로 줄었으나 특허등록 순위는 1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했다.

출처 <http://www.ipso.org>



일본 교토대학, 미국 바이오 기업들과 iPS세포 관련 특허 라이선스계약 체결

일본 교토대학은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에 걸쳐 iPS 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유도만능줄기세포) 관련 특허에 대해 미국 바이오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일본 iPS 아카데미 저팬(IPS アカデミアジャパン)사가 발표했다.

이번 계약체결로 인해 iPS 아카데미 저팬사가 iPS 세포 관련 특허에 대해 해외 기업들과 체결한 라이선스는 총 13건이 된다.

* iPS 아카데미 저팬사는 일본 교토대학의 야마나카신야(山中伸弥) 교수가 개발한 iPS 세포의 연구성과를 관리·활용하는 회사임

이번에 iPS 아카데미 저팬사와 계약을 체결한 미국 바이오기업은 Stemina Biomarker Discovery社, Stemgent社, Life Technologies社 등 3개 기업이다. 그 중에서 Life Technologies社は 전 세계 160개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고 종업원 수가 1만 명을 넘는 바이오 대기업이다.

교토대학은 향후 iPS 세포의 판매뿐만 아니라 제작, 분화, 스크리닝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크리닝(Screening)은 생물집단 가운데서 일정한 특성을 가진 유전자형이나 표현형을 갖는 개체만을 고르는 작업임

출처 news.brains.com

일본 변리사회, 재해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출원 지원

지난 6월 6일, 일본 변리사회(JPAA)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재해지역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사업을 강화하거나 혹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등은 변리사 수수료와 같은 전문가 비용 및 기타 제반 경비 등 지식재산 출원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총 9개 현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이바라키현(茨城縣), 토치기현(栃木縣), 치바현(千葉縣) 등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 및 후쿠시마현

(福島縣), 미야기현(宮城縣), 이와테현(岩手縣) 등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피해가 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재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및 개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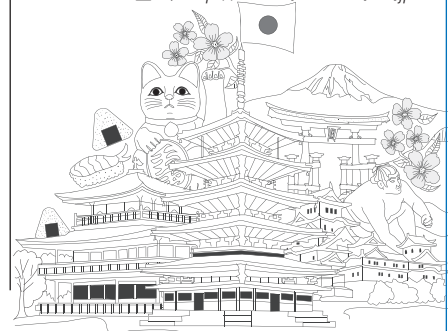
이 서비스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상표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JPAA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이용창구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JPAA는 지역 경제산업국(經濟産業局) 및 지자체의 상공과(商工課) 등과 협력하여 이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JPAA는 지난 2011년 8월에 무코야마(向山)사에 대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서비스 계획은 이러한 지원활동을 확대실시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http://www.nikkan.co.jp>



세계는 지금

중국 재정부, 「해외 특허출원 지원 전용자금 관리방법」 발표

지난 6월 20일, 중국 재정부는 「해외 특허출원 지원 전용자금 관리방법(资助向国外申请专利专项资金管理办法)」을 발표했다.

2009년에 재정부는 「해외 특허출원 지원 전용자금 관리 임시방법(资助向国外申请专利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을 제정하고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억 위안의 특별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재정부는 3년 간 이 임시방법의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지원 효과 및 자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임시방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그 규범력을 「임시방법」에서 「방법」으로 격상시켰다.

이 관리방법에 따르면, 국제출원이란 PCT 출원을 지칭하고 그 지원대상은 중국의 중소기업 및 과학연구기관이다.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는 심사수수료, 유지수수료, 특허검색 기관에 지불한 검색수수료, 대리기관에 지불한 수수료 등이며, 특허 당 최대 5개 국가에 출원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각 국가별 지원금액은 최대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정부는 이 관리방법에 의거해 첨단 기술 산업 및 신흥 산업의 발전을 지원

하는 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출처 jjs.mof.gov.cn

중국 인민망, 인민보험사의 싱타이보험사 상표침해 분쟁 소개

지난 6월 17일, 중국 중앙공산당 기관지인 인민망은 중국 인민보험사가 중국 싱타이보험사의 「보험직행차(保险直通车)」 상표를 침해한 사건을 소개하고 그 침해규모가 약 1,2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타이보험사는 2004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보험직행차」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2008년에 등록했다. 이 상표는 사고보험, 보험중개, 화재보험, 건강보험, 해상보험, 생명보험, 보험컨설팅, 보험통계, 보험정도 등 보험에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 등록됐다.

인민보험사는 2009년 9월부터 「직행차」 상표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싱타이보험사는 인민보험사와 여러 차례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소송 진행에 있어서 인민보험사로부터 각종 방해 받았다.

인민보험사는 싱타이보험사가 약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SAIC에 상표권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홍콩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인민보험사의 패소가 예상된다. 인민보험사는 「직행차」 상표를 자사의 모든 손해보험 상품에 사용했다. 기업보험과 상해보험 등에서의 상표침해를 계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보상금액이 예상된다.

출처 ip.people.com.cn



유럽연합 의회, 4개 위원회 ACTA 찬반 표결 진행

지난 6월 4일, 유럽연합(EU) 의회의 4개 위원회는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 승인을 거부했다.

EU 의회 내 개발위원회, 시민자유위원회, 산업위원회, 법사위원회는 ACTA가 이해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자유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는 ACTA가 개발도상국의 제네릭

의약품 교역 및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Jan Zahradil 조사위원의 승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반대 19표, 찬성 1표(기권 3표)로 거부했다.

시민자유위원회(Civil Liberties Committee)는 ACTA가 EU헌장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지 않으며, EU가 위조행위와 싸워야 하지만 이에 대한 EU의 결정은 조약에 부합해야 함에도 ACTA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반대 36표, 찬성 1표(기권 21표)로 승인을 거부했다.

산업위원회(Industry Committee)는 ACTA가 지식재산권, 영업의 자유, 개인 정보보호, 정보 송수신의 자유 등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으며,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법이 각 산업분야에 대한 특징을 간과하고 있고, 개념 정의에 대한 합의 결여로 유럽 기업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준다고 지적하며 반대 31표, 찬성 25로 거부했다. 법사위원회(Legal Committee)는 반대 12표, 찬성 10표(기권 2표)의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9일 EU의 시민 및 단체들은 핀란드, 사이프러스 등 EU의 24개국 약 120개 지역에서 ACTA에 대한 반대와 EU 의회의 ACTA 거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출처 <http://www.europa.eu>

영국 지식재산청, 'PCT Fast Track' 제도 완화

지난 6월 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특허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운용 중인 'PCT Fast Track' 제도의 이용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완화하여 특허출원 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PCT Fast Track'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영국은 2010년 5월 28일부터 'PCT Fast Track'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특허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하여 특허적격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IPRP)나 서면 견해서(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WO-ISA)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이 출원의 영국 국내 단계에서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영국은 해당 특허의 심사기간을 1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이번에 'PCT Fast Track' 제도에서 완화된 이용요건은 특허적격성에 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특허청구항의 범위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PCT Fast Track'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허출원인은 국제출원 시 그 출원서에 기재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P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완화된 요건에 따르면 특허출원인은 국제출원 시 출원서에 기재한 특허청구항들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IPRP 혹은 WO-ISA의 긍정적 평가를 받더라도,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청구항을 영국 국내 단계 진입 시에 삭제하면 'PCT Fast Track'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UKIPO는 'PCT Fast Track' 제도를 통한 특허심사의 경우, 해당 심사요청을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소한 전체 심사요청의 90%를 처리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PCT Fast Track' 제도 이용요건 완화는 특허출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혁신 및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출처 <http://www.ipo.gov.uk>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KIPO NEWS

특허청,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내리고 등록신청 보정 허용

특허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특허 관련 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온라인 수수료 33종을 인하하고, 등록신청에 대한 보정이 허용되어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과 실시권(사용권)의 설정절차가 쉽고 빨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 보정: 신청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정안내서를 발송하고 신청인이 안내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받은 내용을 보완하는 절차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은 우선권주장 신청료를 포함한 33종의 온라인 신청 관련 수수료이며, 인하 폭은 10% 이상으로 국민의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부자가 적시에 수수료 반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통지서 및 전화 안내에 추가하여 수수료 반환 알림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나 이메일로 수수료 반환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 및 실시권(사용권)을 설정할 때 등록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

어 신청인이 서류 보완 후 새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의 시행으로 등록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반려되지 않고 보완하여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신청인의 시간 및 절차상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원스탑 서비스 가동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은 신기술 등 기업이 상당한 투자를 통해 개발한 영업비밀의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금) 한국특허정보원에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개소하였다.

* 영업비밀이란? 코카콜라의 제조방법과 같이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정보(R&D 자료, 생산방법 등)나 경영정보(고객 리스트, 원가정보 등)를 말함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만든 이유는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늘어나고,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선도기업으

로서의 경쟁적 우위를 일순간에 상실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근간인 부품·소재 분야의 강한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배합 및 처리, 제품 조립 등 핵심 공정을 철저하게 내부에서 진행함으로써 기술 유출 예방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은 그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상황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65% 이상이 영업비밀 보호가 취약 또는 위험수준*에 있어 기술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출처: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10, 산업기술진흥협회)

이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센터』는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및 상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을 위한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비스 운영 등 영업비밀의 유출 예방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원스탑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에너지 절약 위해, 격식 벗어 던진 특허청!!!

특허청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정규 근무시간 후 사무실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반바지와 바이넥 티셔츠 등 자율복장을 허용하는 '직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과 후 반바지 착용 등을 허용하는 '직원 복장 간소화 지침'은 중앙부처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예인 이름을 내건 상표출원 급증

이경규의 꼬꼬면, 강호동 678짬, 김병만의 달인 갈매기 등...

최근 소비자에게 친숙한 연예인의 이름을 내건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출원(서비스표 포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연예인 이름에 상품이나 업종 등을 결합한 상표의 출원은 1998년('개그맨 이경규의 압구정 김밥' 출원)부터 2008년까지 총 27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11건, 2010년에는 1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전년도 대비 157% 증가한 22건이 출원되었으며, 2012년 5월말 현재 12건이 출원되는 등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예인 직업별로 보면, '이경규의 남자라면' 등 개그맨이 58건, '김혜자의 정성떡' 등 탤런트가 23건, '장윤정 김치올레' 등 가수가 5건으로 개그맨 이름을 결합한 상표의 출원이 가장 많았다.

출원 업종별로는 먹거리와 관련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분야가 41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와 관련된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요식업이 25건(29%)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연예인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닛킵·쇼핑몰이 5건, 화장품류가 4건, 기타 1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예인의 이름과 결합된 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연예인

들의 부업 수요와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 맞물리면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예인 중에서도 개그맨 이름의 브랜드 출원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개그맨의 대중적인 지명도가 높아 이를 제품/서비스업의 광고,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상표분야 G5 출범' 국제 상표 질서 우리가 주도한다

한국이 세계적인 상표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특허청은 상표분야 5대 강국의 회의체인 TM5(TM5: Trademark Five)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TM5는 전 세계 상표 출원의 70.4%를 차지하는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의 모임으로 상표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전통적인 상표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 상표 4강 체제(TM4 회의)를 구성하며, 상표 분야 국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최대 해외 출원국인 중국이 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TM4 회의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을 TM4 회의에 합류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올해 드디어 중국이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TM5 회의가 출범하게 됐다.

특허청은 TM5 회의가 우리 기업들의

KIPO NEWS

해외 상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이버 세계 특허청」이 열린다!

전 세계 특허청의 특허심사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선진 5개 특허청 (IP5*) 회원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과 함께 전 세계 특허 사용자를 위한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Global Dossier)」을 구축하는데 합의하였다.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이 참여하는 특허분야 G5 회의

김호원 특허청장은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에서 개최된 「IP5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 「글로벌 지재권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사이버 세계 특허

청'의 구축을 제안하여 모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사이버 세계 특허청이 구축되면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출원인이 전 세계 특허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심사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해외출원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즉, 현재 외국에서 선임한 변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외출원관리*를 사이버 상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원 관리의 경제적·시간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 우선권 주장 등

특허청은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위한 T/F 설치를 제안, 선진 5개 특허청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회원국들은 2016년까지 동 시스템의 구축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하였다.

<http://www.kipo.go.kr>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회원가입을 한번에!

지난 6월 1일부터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회원가입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변리사 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변리사 등록업무를 지난 6월 1일부터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해야 했다. 한편 변리사법의 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해야 해서 변리사 입장에서는 불편이 많았다.

이번 변리사 등록업무의 위탁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 발급,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를 제외하고, 변리사 등록, 등록의 거부, 등록의 취소, 등록료 납부 고지, 각종 신고의 수리,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법인설립 인가 신청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접수 등 등록업무 전반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처럼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등록업무와 변리사회 회원관리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공 특허청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smp@kipa.org

QUIZ

1.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
2. 터키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사막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이 보다 편하게 육류를 요리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이 음식은?
3. 독일 축구 1부 리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한때 차범근 선수가 활약한 적도 있다.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천을 통해 「발명특허」 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책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의견

- ▶ 양해란 독자 _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은 많은데 비해 EU의 특허제도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도 EU의 통합특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생각했던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항이나 그 동향은 미처 알지 못했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은 듯합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절차차나 표 또는 블록 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더 보기 편할 듯 합니다.
- ▶ 이혜빈 독자 _ 삼성과 애플의 경쟁의 주요점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도 있겠네요.
- ▶ 박지영 독자 _ 날개 없는 선풍기 다이슨, 드디어 특허전쟁을 위한 칼을 뽑다'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현재까지는 다이슨과 맞설 태세인 것 같은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궁금합니다.

6월호 퀴즈 정답

1. 니치마케팅
2. 아시아나호텔
3. 피크임금제

퀴즈 정답자

양해란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이혜빈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박지영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KIPA NEWS



우리회-기술보증기금, '특허기술 창업 및 사업화지원' 업무협약

○ 리회는 기술보증기금과 지난 7월 3일, 한국지식재산센터 회의실에서 특허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회는 기술보증 지원대상 특허기술 보유기업을 선정·지원하고, 기보는 우리회가 추천하는 특허기술 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보증 및 기술·경영지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는 것이 방지되고 보다 손쉽게 사업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회 김광림 회장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지원 사업 및 기술금융 지원 인프라의 결합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전문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최적의 창업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열어

우 리회는 지난 6월 12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미국 지식재산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우리회 회원사, 기업·대학·변리사 등 특허담당자, 미국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본 토시코 다케나가 교수의 '미국 신티허법의 우선권과 미국 특허청의 새로운 절차, 추가적인 변화'와 심영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미국 구특허법의 지속성, 신티허법의 모호성 및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012 지식재산 인재양성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미, 프란시스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중요성 강조
「대한민국 지식재산교육대상」에
서울대 홍국선 교수 등 3명 수상도



지 식재산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학,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특허청·카이스트·홍익대학교·인하대학교·전남대학교·강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2012 지식재산 인재양성 컨퍼런스」가 지난 6월 14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대학교수, 기업인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미국의 프란시스 교수를 비롯한 일본, 독일, 중국에서 온 지식재산 교육분

야의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기술·경영·창의력 융합적 역량을 육성하는 교육 및 지식재산을 통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홍국선 교수를 비롯한 3명은,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초기에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민국 지식재산 교육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교육 대상은 올해 처음 수여된 상으로, 홍 교수가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최승철 아주대 교수와 조영호 KAIST 교수가 특허청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대 홍교수는 "내 전공과목을 빼고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시작한 지식재산 교육은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대학자율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 구축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성장과 발전을 넘어 생존의 조건이 되는 지식기반시대에서 국가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다"고 강조하면서, "창의성·전문성과 더불어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을 중점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PA NEWS



원로 발명인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발명계를 이끈 원로 발명인들 한자리에 모여

○ 리회는 지난 6월 20일, 역삼동에 위치한 중식당 루안에서 「원로 발명인 간담회」를 열었다.

원로 발명인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변경삼·신석균·원인호·하상남·최진순·박인호 등 대한민국 발명계를 이끈 원로 발명인 51명이 참석했다.

원로 발명인들은 대한민국 발명계의 발전방안 및 우리회의 발명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원인호 한국발명원 회장은 “차기 정부가 발명계에 자금 및 사업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당부하고, 신석균 한국신발명연구소 회장은 “원로 발명가가 후세 발명가를 위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고, 정부는 원로 발명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했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KIPA 사회봉사단, 사랑실천 나누기

행복바이러스 바자회 참여 사랑과 나눔의 현장 몸소 체험



○ 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지난 6월 8일, 사회복지법인 강남보육원에서 진행한 「행복바이러스 바자회」에 참여하여 행사 준비를 비롯한, 바자회 물품운반 및 판매,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은영 KIPA 사회봉사단장(부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땀을 흘리시며 열심히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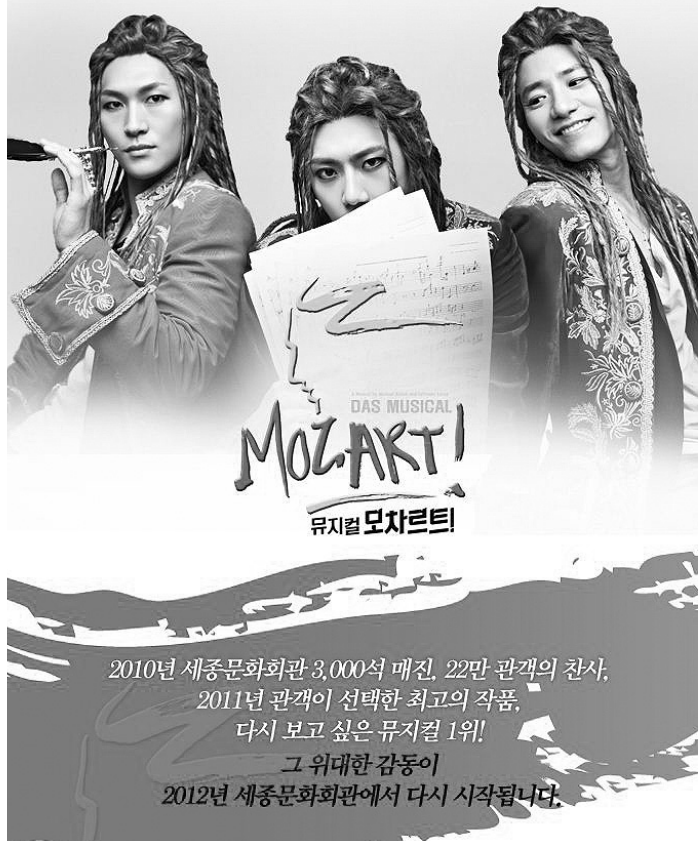


뮤지컬 모차르트!

2012. 7. 10 ~ 2012. 8. 4

199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극장협회(VBW)제작
뮤지컬 <모차르트!>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일본, 헝가리 천 만 관객 동원

을 여름, 음악에 미친 그가 온다!



"세계적 극작가 풀어진 천재 음악가의 역동적 이야기"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 마하엘 쿤체의 대본과 작사로 의지의 주체인 벌 프강(Wolfgang)과 재능의 근간인 아마데(Amade)로 분리해 짚지만 굴곡 많았던 모차르트의 인생을 역동적으로 풀어낸 탁월한 구성



공연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기간 : 2012. 7. 10 ~ 2012. 8. 4
관람시간 : 150분
기획사 : (주)이엠케이뮤지컬컴퍼니

"클래식한 음악과 소재를 락과 재즈의 형식으로 풀어낸 뮤지컬 넘버"

'모차르트' 라는 클래식한 소재를 락의 열정, 팝의 감미로움, 재즈의 부드러운 숨결로 풀어낸 최고의 작곡가 실베스티 르베이의 뮤지컬 넘버들과 풍요롭고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가는 깊이 있는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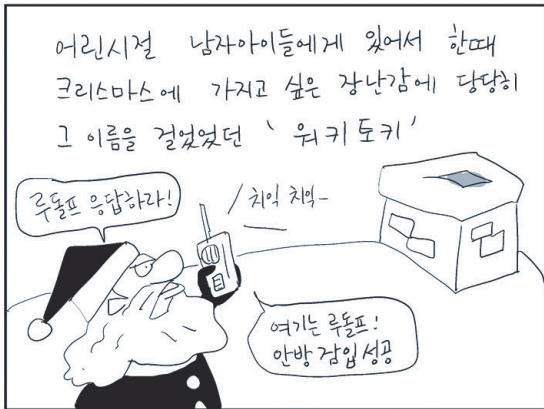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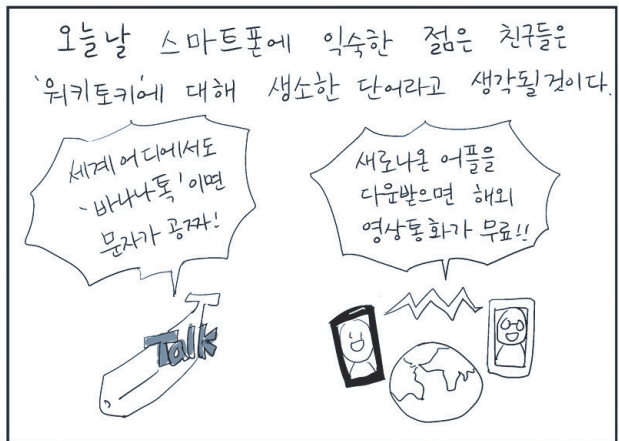
"500여벌의 의상과 가발로 표현되는 화려한 무대미술"

명화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배경, 스케일이 있는 무대 디자인, 500여벌의 화려한 의상, 시대를 재현하는 프레임 가발과 가면 소품 등이 보여주는 고품격 뮤지컬

뮤지컬 <모차르트!>는 일본 유료객석 점유율 97% 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8년 간 매출 1위를 고수해 온 뮤지컬 <엘리자벳!>의 기록을 돌파한 유일한 작품이다.

몰래 발명이야기 _ 위키토키

글·그림 김민재



사실 워키토키는 라디오가 발명된 이후, 더욱 작고 휴대하기가 용이한 라디오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시점에 등장하였다.

돈 힝스
(1937)



음. 일단 위급한 상황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도구를!

현재의 라디오를 개선해 볼까?!

당시의 라디오는 한 기기당 여러사람이 사용하였다. 즉



이러한 점을 개선한 라디오를 구상한 힝스는 드디어!!

양방향 라디오 등장!! 라디오 한대당 한사람만 사용!



이렇게 만들어진 라디오는 마침 CIA의 전신인 미국 OSS에 눈에 띄게 되었고,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에서는 군인들의 통신장비로, 또 경찰과 해안경비대에서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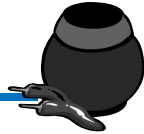
"아. 근데 궁금한건 그 무전기의 이름이 왜 '워키토키'냐구요?"

"아~ 그건 말이지, 걸으면서 (walking) 대화 (talking)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넣어서 만든거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Sunchang 전라북도



순창고추장

순창고추장은 조화로운 맛이 강조된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통의 맛을 재연한 우리의 대표 식품이다. 고추장은 아밀라아제에 의한 완화작용으로 찹쌀, 멥쌀, 보리쌀 등의 탄수화물에서 생성되는 당류의 맛, 프로테아제의 단백질 분해작용으로 생성된 아미노산의 구수한 맛, 고춧가루의 매운맛, 그리고 소금과 간장의 짠맛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맛을 형성하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독특한 대표 식품이다.



| 상표명 |
순창 고추장

| 권리자 |
영농조합법인 순창장류연합회

| 등록번호 |
제 10호

| 상품분류 |
제 30류 고추장

연락처
영농조합법인 순창장류연합회
063-653-3376



1/ 유래

역사적으로 고추장이 우리나라에서 식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이나 17세기 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추장의 탄생 시기를 16세기 말경으로 본다면 장지현 박사의 고추 도래 시기 추정과 비교할 때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선조 때 태어나서 임란을 겪었던 허균의 저서 도문대작에서 초시(매운 메주)란 용어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고추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2/ 특성

순창 지방의 독특한 재래식 비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검붉은 색깔에 자르르하며 혀끝에 닿는 알싸한 감칠맛과 은은한 향기, 감미로운 맛은 타지방 고추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음식이다. 순창 전통 고추장은 순창에서만 생산되는 좋은 원료와 맑고 깨끗한 물로 담근 훌륭한 건강 발효식품이다. 순창 고추장의 맛과 향기는, 순창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타지방에 가서 담가도 순창 고추장의 맛이 나지 않는데 아마도 순창 고추장의 맛은 오염되지 않은 순창의 물맛과 순창 기후와의 조화로 나오는 특유의 맛이기 때문일 것이다.

Youngdong 충청북도



영동곶감

영동곶감은 무공해 알칼리 식품으로 몸에 좋으며, 소백산맥의 지리적 특성으로 지형과 물, 기후가 감의 생육에 적합하여 당도가 높고 색깔이 아름다우며 품질이 우수하다.



상표명 | 영동곶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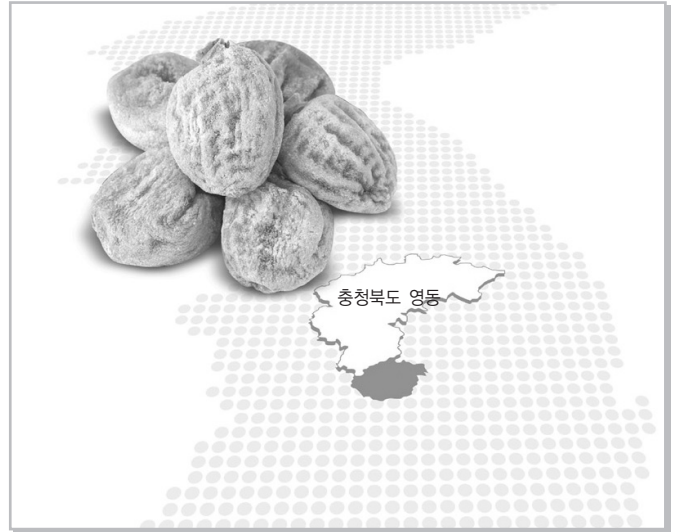
관리자 | 영농조합법인 영동곶감연합회

등록번호 | 제 31호

상품분류 | 제 29류 곶감

연락처

영농조합법인 영동곶감연합회
043-743-0330



1/ 유래

우리나라의 감 재배는 고려 원종 때 지어진 “농상 집요”에 기록이 있고 조선 성종 때인 1474년에 지어진 “국조오례의”에서는 감을 중추제에 제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광해군 1614년에 쓰인 “지봉유설”에는 고욤나무, 정향시흥시 등의 재배 기록이 있다. 그 밖에 현종 때 지어진 구황촬요에는 소시의 조리법과 곶감 만드는 법이 나와 있고 서명응에 의하여 쓰인 “고사십이집”에 감 식초와 흥시를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2/ 특성

영동곶감은 소백산맥의 지리적 특성으로 지형과 물, 기후가 감의 생육에 적합하여 당도가 높고 색깔이 아름다우며 품질이 우수하다. 특히 감나무 생육에 적당한 평균 온도와 배수가 양호한 토양으로 덕분에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군내 전 지역에서 재배되고 특히 백두대간에 있는 지역의 감과 곶감의 품질이 우수한데 이는 적절한 밤과 낮의 기온 차로 인하여 생육기 감의 색상이 아름답고 당도가 높으며 건조 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높은 밤과 낮의 기온차와 적당한 바람 등 건조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 현명하게 이겨내기

무더운 여름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사계절 가운데 여름철 건강관리가 가장 어렵고, 자칫 여름에 몸 관리를 소홀히 하면 겨울에 반드시 병이 온다고 했다. 그래서 여름철엔 몸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 여름을 보다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땀과 건강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얼굴이 고열되고 몸이 할 것 없이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더운 날씨에 움직이거나 운동을 해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땀을 흘려 몸 안의 열을 발산함으로써 체온이 조절된다. 따라서 땀을 적당히 흘리면 체온조절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어 우리 몸에 이롭다.

한의학에서는 땀을 중요하게 여긴다. 땀은 몸의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체액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땀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흘린다면 다한증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질병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땀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자한(自汗)과 도한(盜汗) 등으로 나눈다. 낮에 비오 듯 전신에 땀을 흘리는 것을 자한

김소형
한의학 박사



이라고 하며, 이는 기가 약해져 땀 조절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하여 기운을 보하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밤에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땀을 도한이라고 하는데, 체내 음기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긴장이 지속된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 보양식과 가벼운 운동 등으로 음기를 보충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땀을 흘린다면 여러 가지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내 몸에 하여 이상이 있지 않은 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흐르는 땀, 황기로 다스린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 이때 카페인 함유된 아이스커피 대신 인삼과 맥문동, 오미자를 달인 생맥산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이름 그대로 맥을 살리고 기운을 돋워주는 한방차로,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며 갈증을 잘 느끼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또 땀이 많고 원기가 부족한 분들은 황기차가 도움이 되는데, 한방에서 기를 보하는 약재로 많이 쓰이는 황기는 차로 마시거나 삼계탕에 넣어도 좋다.

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과일은 갈증 해소는 물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 중 하나인 참외는 수분 함량이 많아 갈증해소에 좋고, 무기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 여름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땀의 배출로 인해 산성화되기 쉬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하지만 성질이 냉해 손발이 차거나 장이 약한 사람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갈증해소에는 수박도 좋다. 90% 정도가 수분인 수박은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 훌륭한 수분 공급원이 된다. 또 비타민A,C와 섬유질이 풍부해 여름철 땀으로 배출된 체액을 보충하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

다. 또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낮아 부종 환자와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입맛 떨어진다면 보양식으로

더위에 지치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여 기운을 잃게 되고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식사는 규칙적으로 세끼를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고, 기를 북돋워 주고 피로를 없애주는 보양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름철에 먹으면 좋은 보양식으로는 닭고기와 장어가 있다.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각광받아 온 닭고기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손꼽히는데, 닭고기는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강하게 하며, 허약 증세에 좋다. 장어는 단백질과 칼슘, 철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자양강장 외에도 성인병 예방,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입맛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압법도 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의 오목한 부분에 위치한 합곡혈을 지압하면 온 몸의 기를 보충시키고 입맛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 더불어 신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데, 신맛은 위액의 분비와 소화를 돕고 감각을 잃은 입맛을 되살려 준다. 초고추장에 새콤하게 무친 나물이나 오미자차, 매실차 같은 한방차, 신맛이 나는 과일 등은 여름철 입맛을 살리는 데 제격이다.

몸이 따뜻해야 여름철 배탈 예방

날씨가 덥다고 하여 지나치게 찬 음식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여름이 되면 인체의 열 기운이 피부와 상부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몸 속은 냉해지게 되는데, 이 때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속은 더욱 차가워져 복통이나 설사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

사상체질로 봤을 때 여름철 배탈은 소음인과 태음인에게 많이 나타난다. 특히 소음인의 경우 체질적으로 몸이 차고 속이 냉하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이 들어갔을 경우 다른 체질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탈이 잘 나게 된다. 하여 소음인은 늘 음식을 미지근하게라도 데워 먹어주는 것이 좋다.

여름철 배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냉방기를 장시간 세게 트는 것,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노출이 심한 의상을 즐겨 입는 것은 복통의 원인이 된다.

만약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증세가 나타난다면 따뜻한 손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돌리며 마사지를 하거나 쓸어주면 설사 증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배꼽 좌우 양쪽으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떨어진 지점인 천추혈을 지압하면 설사 증상은 물론 위, 소장, 대장 등 소화기 질환 전반에 걸쳐 효과가 있다.

설사가 잦을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데, 부추죽은 인체의 냉기를 몰아내고 혈행을 좋게 하며 기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잦은 설사로 떨어진 체력을 보강해준다. 사과즙도 좋은데 사과는 장벽을 보호하면서 유독 물질의 흡수를 막아주고 유익한 세균의 번식을 도와주어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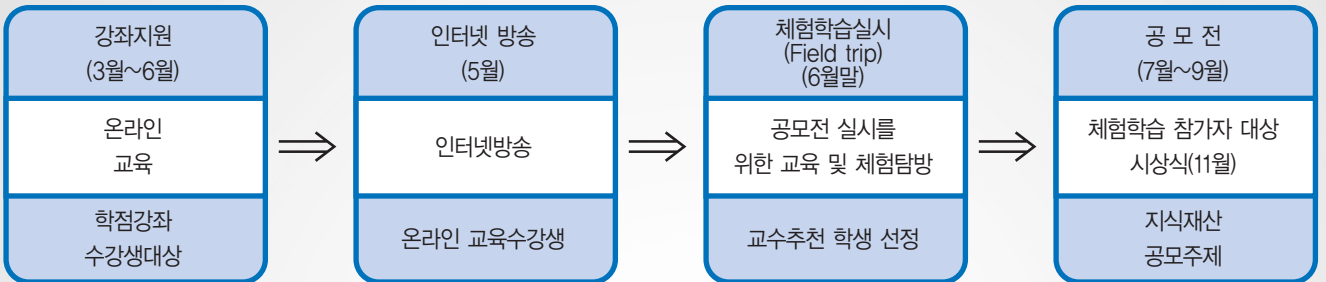
증세가 심할 때에는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 날거나 쓴 음식, 향신료 등은 피하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장 기능이 떨어져 설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2012. 7 |



12년도 대학 지식재산 이러닝 (IP-Challenge 과정 지원 안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www.ipacademy.net)에서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지식재산 이러닝 강좌지원 교육과 연계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IP-Challenge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강좌운영 교수님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IP-Challenge 교육 프로그램 안내



강좌지원

- 지식재산 이러닝 강좌 지원(변리사의 지식재산 질의응답 제공)
※ 지식재산권 일반,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 적성이해, 권리분석방법 등

인터넷 방송

- 녹화방송으로 진행하여 시·공간 제약없이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 제공
※ '기업의 특허전략', '명세서 권리분석방법' 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방송 교육

체험학습(Field trip)

- 선발대상 : 교수 추천자(성적우수자), 인터넷 방송 수강자
- 체험내용 : 지식재산 실습과정 및 지식재산 현장 탐방 (특허법원, 기업 특허부서 및 관련 생산시설 등)

IP-Challenge 콘텐츠 공모전

- 참가대상 : 체험학습 참가자
- 공모내용 : 기업과 연계된 IP주제에 대한 레포트형식 제출·발표평가
- 시상내역(안)

명칭	상격	시상 작품수	시상 내용
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1	상장 및 상금
금상	특허청장상	2	상장 및 상금
은상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3	상장 및 상금
동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	8	상장 및 상금
장려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0	상장 및 상품권
합계		34	

문의 및 교육신청

운영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 설경범 계장
- Tel : 02-3459-2773, 2765 Fax : 02-3459-2789, Email : soul1245@kipa.org

※ 교육 신청 전에 미리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smp@kipa.org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smp@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 TEL (02)3459-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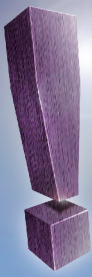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편집 : 기획팀 박선민 (Tel. 02-3459-2727, Fax. 02-3459-2729)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2012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전국 본선대회 | 2012년 7월 26일(목) ~ 28일(토) (서울 코엑스)

※ 본선 은상 수상팀 이상 상금지급, 최우수 3팀 선정 해외연수 기회 제공

| 후 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여성발명협회(후원 예정기관)

| 주 최 |



| 주 관 |



<http://twitter.com/edukipa>



제 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제14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전시기간 2012년 7월 26일(목) ▶ 7월 30일(월)

• **개막식 및 시상식** : 2012년 7월 26일(목)
※ 창의력챔피언대회와 동시 개막

전시장소 COEX Hall A1

문의처 02)3459-2752, sol4711@kipa.org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WIPO,
국립과천과학관, 경제4단체, 발명유관단체

주최 특허청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hosunMedia 조선일보

주관 한국발명진흥회